

#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환경노동위원회 】

2019.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 차 례

# CONTENTS

## [환경부]

###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7

### II. 주요 현안 분석 / 12

-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 12
- 2.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19
  -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0
  - 2-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 27

### III. 개별 사업 분석 / 32

- 1.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32
- 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의 사전절차 수행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36
-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 43
-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9
-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확대된 물량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53
- 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 58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63
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69
9.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73
10.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78
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 필요	83
1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의 면밀한 분석 필요	87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91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96

## [고용노동부]

### I. 예산안 개요 / 99

1. 현 황	9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5

### II. 주요 현안 분석 / 108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108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17
2-1.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 관리 필요	118
2-2.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23



### III. 개별 사업 분석 / 126

1.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	126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도입 취지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130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의 인원 편성 필요 .....	134
4.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 .....	139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	143
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등 .....	147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154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158
9.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	162
10.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필요 .....	165
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법률 개정 심사 추이 반영 필요 .....	169
12.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174
※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	180



## [기상청]

### I. 예산안 개요 / 183

- 1. 현 황 ..... 18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8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85

### II. 개별 사업 분석 / 187

-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 187
- 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195
- 3.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사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98
- 4.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 202



환경부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5,29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3억원(0.3%)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15,46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5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908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7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77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2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760,523	1,586,495	1,586,495	1,559,405	△27,090	△1.7
- 일반회계	809	800	800	816	16	2.0
- 환경개선특별회계	1,723,319	1,583,389	1,583,389	1,546,605	△36,784	△2.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93	500	500	500	0	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435	1,806	1,806	11,484	9,678	535.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767	-	-	-	-	-
기 금	10,767	950,030	950,030	969,840	19,810	2.1
- 한강수계관리기금	980,009	477,974	477,974	490,762	12,788	2.7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99,738	242,918	242,918	247,094	4,176	1.7
- 금강수계관리기금	252,589	127,734	127,734	127,667	△67	△0.1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23,331	87,780	87,780	90,178	2,398	2.7
- 석면피해구제기금	89,798	13,624	13,624	14,139	515	3.8
합 계	2,740,532	2,536,525	2,536,525	2,529,245	△7,280	△0.3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조 3,56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65억원(3.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955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52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5조 7,57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9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조 1,721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824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13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198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08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216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967,602	6,925,498	8,141,159	8,400,243	259,084	3.2
- 일반회계	134,665	700,241	709,041	795,509	86,468	12.2
- 환경개선특별회계	4,402,965	4,321,679	5,259,400	5,757,734	498,334	9.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4,177	67,806	67,806	55,232	△12,574	△18.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91,642	1,068,081	1,155,143	619,688	△535,455	△46.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4,153	767,691	949,769	1,172,080	222,311	23.4
기 금	913,331	924,152	938,403	955,850	17,447	1.9
- 한강수계관리기금	447,937	465,568	468,296	482,415	14,119	3.0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4,260	242,506	247,620	251,307	3,687	1.5
- 금강수계관리기금	120,637	115,645	117,916	119,776	1,860	1.6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2,613	82,975	83,050	80,757	△2,293	△2.8
- 석면피해구제기금	17,884	17,458	21,521	21,595	74	0.3
합 계	6,880,933	7,849,650	9,079,562	9,356,093	276,531	3.0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환경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6조 3,03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5,131억원(31.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2,90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5억원이다.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9	800	800	816	16	2.0
환경개선특별회계	5,129,651	4,787,065	4,787,065	6,290,437	1,503,372	3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93	500	500	50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435	1,806	1,806	11,484	9,678	535.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767	-	-	-	-	-
합 계	5,166,855	4,790,171	4,790,171	6,303,237	1,513,066	31.6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3조 6,66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469억원(8.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5,293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2,90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52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1조 1,7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97억원이다.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45,530	3,866,326	4,639,666	5,529,341	889,675	19.2
환경개선특별회계	4,769,625	4,787,065	5,807,508	6,290,437	482,929	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4,177	67,806	67,806	55,232	△12,574	△18.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4,153	767,691	949,769	1,172,080	222,311	23.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91,642	1,068,081	1,155,143	619,688	△535,455	△46.4
합 계	9,745,127	10,556,969	12,619,892	13,666,778	1,046,886	8.3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2,26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1,609억원(15.1%)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6,510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39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465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4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607억원이다.

[2020년도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615,707	557,123	557,123	650,981	93,858	16.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7,569	252,510	252,510	263,893	11,383	4.5
금강수계관리기금	130,874	131,801	131,801	146,526	14,725	11.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2,236	91,381	91,381	104,650	13,269	14.5
석면피해구제기금	36,222	33,100	33,100	60,736	27,636	83.5
합 계	1,142,608	1,065,915	1,065,915	1,226,786	160,871	15.1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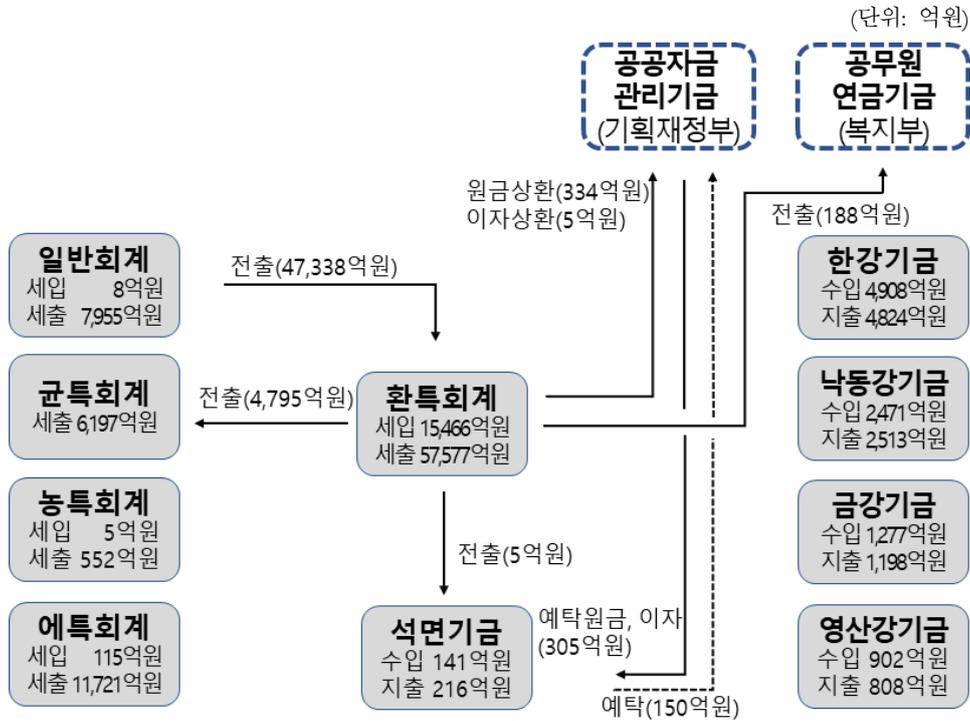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4조 7,338억원이 전출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79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88억원이 전출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339억원을 상환한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5억원의 예탁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고, 150억원을 다시 예탁한다.



주: 총계기준  
자료: 환경부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하여 대기환경 부문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2019년 1조 439억원 → 2020년 2조 1,891억원), ②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재해·재난·사고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환경·수자원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19년 3조 7,764억원 → 2020년 3조 8,677억원), ③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경제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19년 3조 7,764억원 → 2020년 3조 8,677억원).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고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한 주요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및 자원순환·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환경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4,65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은 팔당호, 대청호 등 기존 광역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상수도 관로 내 상시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 관 세척 등 수도관망을 적정 운영관리하고, 사고 징후를 사전예측하여 신속한 대응과 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500
	수도권(I)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2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4,517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200
	포항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200
환경개선 특별회계 (15개)	환경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00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체계 구축	1,600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5,969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6,585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381,092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4,072
	재활용품 비축사업	10,396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	1,980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R&D)	4,738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R&D)	4,442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R&D)	10,242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6,75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R&D)	7,512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R&D)	2,00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	12,120
합 계	465,620	

자료: 환경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대기개선 추진대책, 노후상수도정비,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이 있다.

① 대기개선 추진대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확대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노후상수도정비는 노후된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누수를 저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증액되었으며, ③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이 증액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개)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R&D)	500	500	1,986	1,486	297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2,150	2,150	5,950	3,800	177
	수자원종합연구	9,199	9,199	12,338	3,139	34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사업	1,000	1,000	6,700	5,700	570
	광양(I)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	1,200	1,200	7,000	5,800	483
	충주댐계통 공업 용수도사업(광역II단계)	11,869	11,869	17,808	5,939	50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 수도(해수담수화) 사업	1,000	1,000	9,200	8,200	820
	한강하류권(4차)급수 체계조정사업	200	200	800	600	300
	수도권(II)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8,188	12,188	11,570	3,382	41
	대청(III)광역상수도건설	18,995	23,795	36,358	17,363	91
	금강광역 노후관 개량(2차)	200	200	809	609	305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7,688	7,688	12,145	4,457	58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SWC 구축 시범사업	1,638	1,638	2,457	819	50
	지하수관리	34,582	34,582	59,095	24,513	71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2,449	2,449	4,080	1,631	67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	20,127	20,127	29,093	8,966	45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0	0	3,700	3,700	순증
	소규모댐건설	16,300	16,300	25,120	8,820	54
	주암댐 도수터널	2,121	2,121	3,102	981	4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안정화사업					
	댐 안전성강화(I 단계) 사업	22,000	22,000	38,015	16,015	73
환경개선 특별회계 (56개)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725	2,725	3,867	1,142	42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R&D)	1,813	1,813	2,484	671	37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R&D)	1,441	1,441	4,663	3,222	224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R&D)	3,500	3,500	4,571	1,071	31
	환경분쟁조정정보화 시스템운영(정보화)	156	156	403	247	158
	비점오염저감사업	50,120	50,120	77,429	27,309	54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	3,890	3,890	7,877	3,987	10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7,591	9,066	10,861	3,270	43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32,567	32,567	52,575	20,008	61
	하수관로정비	599,330	625,885	630,297	30,967	5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0	7,294	15,879	15,879	순증
	상수도 연구관리	2,706	2,706	6,486	3,780	14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1,050	21,050	33,559	12,509	59
	새만금사업환경대책	19,602	19,602	27,592	7,990	41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R&D)	10,460	10,460	17,900	7,440	71
	표토환경보전관리 기술개발사업(R&D)	2,200	2,200	3,245	1,045	48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3,100	3,100	21,475	18,375	593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0	10,000	6,554	6,554	순증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8,219	8,219	18,040	9,821	119
	유해폐기물처리및대집행	10,912	54,603	28,759	17,847	16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2,154	2,154	13,651	11,497	534
	재활용산업육성용자(용자)	128,365	128,365	163,365	35,000	27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12,403	12,403	19,664	7,261	59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83	183	1,063	880	48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303	303	432	129	43
	위해우려 매립시설	712	712	1,131	419	59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7,600	7,600	11,063	3,463	4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국폐기물통계조사	0	0	400	400	순증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2,752	8,672	25,462	22,710	825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930	11,230	28,430	23,500	477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13,000	28,000	28,000	15,000	115
	국가환경산업기술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046	3,758	2,664	618	30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	1,537	1,537	3,387	1,850	120
	한국환경공단 출연	107,322	107,322	118,569	11,247	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3,205	3,205	5,039	1,834	57
	화학물질관리 국제협력	291	291	414	123	42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30	938,451	968,662	711,232	276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50,889	77,842	67,911	17,022	33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32,815	32,815	54,451	21,636	6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39,360	39,360	67,083	27,723	70
	익취취약지역 및시설관리대책	1,833	1,833	3,033	1,200	65
	대기유해물질관리	3,938	3,938	5,805	1,867	47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557	29,866	21,524	9,967	86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7,971	7,971	12,060	4,089	51
	화학제품 안전관리	12,490	12,490	17,179	4,689	38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7,034	7,034	10,061	3,027	43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9,998	85,013	53,046	33,048	165
	생활공해관리	8,182	8,182	12,501	4,319	53
	화학물질정보통합 시스템구축(정보화)	721	721	1,221	500	69
	전시관 기획 및 운영	1,364	1,364	2,760	1,396	102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15,408	115,408	140,442	25,034	22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R&D) (환경부)	1,006	1,006	3,539	2,533	252
	습지보전관리	8,603	8,603	14,988	6,385	7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7,353	7,353	10,267	2,914	40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R&D)(환경부)	400	400	700	300	75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기반 구축	9,772	9,772	12,728	2,956	3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5,700	5,700	12,500	6,800	119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256	632,976	738,180	197,924	3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42,050	226,458	349,458	207,408	146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4,657	4,657	6,580	1,923	41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3개)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0	0	458,013	458,013	순증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4,896	4,896	7,918	3,022	62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695	1,695	9,573	7,878	465
한강수계 관리기금 (1개)	환경기초시설운영	124,196	124,196	148,767	24,571	20
낙동강수 계관리기금 (2개)	오염총량관리	3,119	3,119	5,803	2,684	86
	정수비용지원	813	1,327	1,327	514	63
금강수계 관리기금 (2개)	오염총량관리사업	2,885	2,885	4,563	1,678	58
	생태하천복원사업	0	280	572	572	순증
영산강섬 진강수계 관리기금 (1개)	오염총량관리사업	1,625	1,700	3,165	1,540	95
석면피해 구제기금 (1개)	석면피해구제급여	12,074	16,137	16,392	4,318	36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환경부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 가. 현황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sup>1)</sup>은 수도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810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2019년 5월말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도물 사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적수 문제<sup>2)</sup>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8,764억원의 국비(총 사업비 1조 3,737억원)를 투입하여 수도물 공급과정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2(3년)
- (사업대상) 161개 지자체(지방수도사업자)
- (시행근거) 수도법 제2조, 제18조 및 제75조
- (사업조건·시행주체) 직접 및 국고보조(특·광역시 50%, 시·군 70%)
- (총사업비) 1조 3,737억원('20년 6,715억원, '21년 4,650억원, '22년 2,372억원)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26

2) 2019년 6월말 서울 영등포구 일대와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도 붉은 수도물 신고가 이어졌고, 7월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일부 지역에서 검은 수도물 발생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도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3,737	8,764	4,973	6,715	3,811	2,904	4,650	3,309	1,341	2,372	1,644	728
①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162	162	-	162	162	-	-	-	-	-	-
	인프라	12,552	7,829	4,723	6,218	3,395	2,823	4,240	2,968	1,272	2,094	1,466
② 유역수도지원센터	825	575	250	219	138	81	328	259	69	278	178	100
③ 자산관리시스템	198	198	-	116	116	-	82	82	-	-	-	-

자료: 환경부

2020년 예산안에서는 ①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정립 및 동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62억 1,800만원, ②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감시하며 수질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3,394억 6,800만원, ③ 지자체의 상수도 및 물관리를 지원하고, 사고징후 감지 및 위기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138억 5,600만원, ④ 지방상수도 시설 개수, 위치, 상태 등을 DB화하여 잔존수명, 위험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15억 5,000만원 등 총 3,8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 [2020년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0	0	0	381,092	381,092	순증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0	0	0	16,218	16,218	순증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0	0	0	339,468	339,468	순증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0	0	0	13,856	13,856	순증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0	0	0	11,550	11,550	순증

자료: 환경부

3)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한 장비로 자동드레인, 재 염소설비, 정밀 여과장치, 관세척 장치, 스마트 미터링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도물 공급 순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물 공급과정과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수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비 3,394억 6,800만원과 지방비 2,823억 400만원 등 총 6,21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sup>4)</sup>

환경부는 수질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질관리” 측면에서 수질 취약구간의 이물질 제거하고 소독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밀여과장치와 재염소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수질감시” 차원에서 물 공급과정 중 수질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며, “위기대응” 측면에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과 오염물질 유출을 막는 관세척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시간 수압·유량 감시장비와 위기알림서비스 시행을 위한 원격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질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내역사업을 편성하였다.

4)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2,552억원이며, 국고보조율은 특·광역시 50%, 일반 시·군은 70%가 적용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억원)

사업내용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전 체	13,737	6,715	4,650	2,372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162	162	-	-	국비 100%
• 기준정립, 상수관망 운영현황조사	43	43	-	-	
• 관망모델 구축 및 검·보정	53	53	-	-	
• SWM 기본계획	55	55	-	-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계획	11	11	-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2,552	6,218	4,240	2,094	특광역시 국비 50% 시·군 국비 70%
• 기본 및 실시설계	368	183	185	-	
• 수질관리(재염소, 정밀여과장치)	2,456	858	950	648	
• 수질감시(수질측정장치)	1,208	345	485	378	
• 위기대응(관 세척, 자동드레인)	3,598	2,227	997	374	
• 재발방지(스마트미터, R/F 등)	4,841	2,524	1,623	694	
• 워터코디·닥터 장비	81	81	-	-	

자료: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비와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2020년 예산안 확정 시 동 사업의 타내역사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시, 당해연도에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자체(현재 부처안은 43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일부를 완료한 후,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호5)에 따라 재난복구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sup>6)</sup>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sup>7)</sup>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인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부터 도출된 분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검토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 규모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기본 및 시설계획, 공사비 등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 16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첫째, 상수도관로 및 부대시설 현황, 관망전산화, 관세척 등 수질관리 인프라 구축 현황, 수질민원 발생 등 전국 상수도관망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수리모델링을 활용한 수질 취약구간 분석으로 관 세척 구간, 수질 감시시스템 설치 위치 선정 등 전국 상수도관망의 수리·수질모델을 구축하며, 셋째,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6)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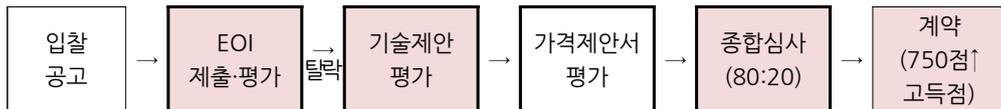
- (총사업비) 16,218백만원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수행방식)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자원공사에서 용역 계약)
- (과업내용)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전국 상수도관망 운영현황 조사
  - 전국 상수도관망 수리·수질 Model 구축·보정
  - 스마트 관망 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자료: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통해 추진하며,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설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며, 2020년 예산안 확정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전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으로, 계약 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과제 수행에도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월되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절차]



자료: 환경부

특히,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안)’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인 161개 지자체 및 전국에 설치된 123,885km 이상의 도수관로,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를 대상으로 일반수도 급수현황 조사, 도·송수·배수관로 현황 조사, 관망 전산화 구축 현황 조사, 관망 모델 구축 검·보정,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 다수의 세부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당해연도 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공고부터 심사와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용역과제의 완료가 지연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등 추후 계획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sup>1)</sup>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sup>2)</sup>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sup>3)</sup>은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6,329억 7,600만원 대비 1,052억 400만원(16.6%) 증액된 7,38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sup>4)</sup>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2,264억 5,800만원 대비 1,230억원(54.3%) 증액된 3,494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3)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1
- 4)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6

[2020년도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47,526	540,256	632,976	738,180	105,204	16.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342,750	440,000	463,720	646,350	182,630	39.4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103,255	96,010	165,010	85,350	△79,660	△48.3
공공충전시설 관리 등 운영비	1,521	4,246	4,246	5,779	1,533	36.1
저공해차 보급제도 지원	0	0	0	701	701	순증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9,835	142,050	226,458	349,458	123,000	54.3
수소승용차	14,835	97,000	130,408	254,250	123,842	95.0
수소충전소	15,000	45,000	96,000	95,100	△900	△0.9
기타 운영비	0	50	50	108	58	116.0

자료: 환경부

##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및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8.12)에 따라 설정된 전기차 보급목표(22년까지 43만대) 조기 달성의 일환으로 특히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승용차 65,000대, 전기버스 300대, 전기화물차 6,000대 및 전기이륜차 11,00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승용차는 1대당 800만원,<sup>5)</sup> 전기버스는 1대당 1억원, 전기화물차는 1대당 1,800만원(초소형화물차는 51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1대당 230만원을 50%의 보조율로 지원한다.

5)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물량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기타 유인책(다양한 전기차 모델 출시, 확충된 충전 기반,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단가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예산안에서는 전기승용차 구매자 개인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이 중단되고 공공부문 대상 지원 물량(8,000기)이 편성되었고,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단가가 1기당 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전기이륜차 배터리 팩 교환형 충전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0년 예산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 세부편성내역]

(단위: 대, 기, %)

구분	보조금	2019년 추경(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B-A)/A
전기승용차	9백만원 → 8백만원	42,000대	65,000대	23,000대	54.8
전기버스	100백만원	497대	300대	△197기	△39.6
전기화물차	(일반) 18백만원 (초소형) 5.1백만원	(일반) 1,155대 -	(일반) 4,000대 (초소형) 200대	(일반) 2,845대 (초소형) 200대	246.3
전기이륜차	2.5백만원×50% → 2.3백만원×50%	11,000대	11,000대	-	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백만원	300대	300대	-	0.0
급속충전기	(일반) 50백만원 → 40백만원	(일반) 1,800기 (버스) 120기	(일반) 1,500기 (버스) -	(일반)△300기 (버스)△120기	△16.7 △100.0
완속충전기	3백만원	12,000기	8,000기	△4,000기	△33.3
교체형(이륜)	45백만원	-	30기	30기	순증

주: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보급계획 대수를 합한 숫자임  
자료: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에 따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의 연도별 보급 계획과 지자체의 수요현황, 수소차 제작사의 연간 생산계획(수소승용차 10,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을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사전절차 지연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물량을 조정(2019년 추경예산 50개소 → 2020년 27개소)하는 한편, 2020년에 확대된 수소버스 공급물량에 따라 수소버스 전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지원 물량 또한 확대 편성(2019년 추경예산 5개소 → 2020년 13개소)하였다.

[2020년 예산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세부편성내역]

(단위: 대, 개소, %)

구분	보조금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B-A)/A	
수소승용차	22.5백만원(정액)	5,467대	10,100대	4,633대	84.7	
수소버스	200백만원(정액)→ 150백만원(정액)	37대	180대	143대	386.5	
수소 충전소	일반	3,000백만원×50%	50개소	27개소	△23개소	△46.0
	버스	6,000백만원×70%	5개소	13개소	8개소	160.0

주: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보급계획 대수 및 개소를 합한 숫자임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은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특히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 2016년 이래로 실집행 실적 부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평균 90.4%로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43.1%로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927억 2,000만원의 경우, 국비 대부분이 교부되었으나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7~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민간이전 기관 등)						
	예산	추경 예산액 (A)	집행액 (B)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2017	235,250	243,160	243,160	243,160	110,122	353,282	265,756	80,787	6,739	75.2
2018	297,255	390,455	390,455	390,455	80,787	471,242	425,963	32,647	12,632	90.4
2019 (9월)	476,000	538,720	530,798	530,798	32,647	563,445	242,904 <sup>6)</sup>	미정	미정	43.1

주: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e나라도움 확인 기준, 충전기 보급 사업은 보조사업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기준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기자동차의 보급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보급물량이 당초 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물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2017년 결산 시 이월물량 5,173대에 비해 2018년 이월물량이 1,335대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보급계획 물량이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8월말 현재 실제 보급실적이 53.4%에 그쳐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버스 보급 사업의 경우, 2018년 총 계획물량 209대 대비 보급 실적이 121대(57.9%)로 부진하였으며, 2019년 8월말 현재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300대와 추경 반영물량 197대 및 이월된 물량 145대를 합한 총 보급계획물량 642대 중 116대만이 보급된 실정이다.

전기이륜차의 계획물량 대비 보급 실적은 2017년 52.5%, 2018년 71.9%, 2019년 8월말 기준 58.6%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계획된 물량의 연내 보급을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경우, 현재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계획된 1,155대 중 단 43대만이 보급된 실정이다. 이는 현재 보급 중인 전기화물차 차종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80km 수준으로 매우 짧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6) 환경부에 따르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가 약 180km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전기화물차가 금년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므로, 연내에 전기화물차 보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단위: 대)

차종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전기 자동차	2017	14,000	5,454	-	19,454	14,138	5,173
	2018	20,000	5,173	6,500	31,673	30,966	1,335
	2019.8월	42,000	1,335	-	43,335	23,126	미정
전기버스	2017	100	65	-	165	99	24
	2018	150	24	35	209	121	145
	2019.8월	300	145	197	642	116	미정
전기 이륜차	2017	1,350	137	-	1,487	780	531
	2018	5,000	531	-	5,531	3,975	1,074
	2019.8월	10,000	1,074	1,000	12,074	7,073	미정
전기 화물차	2017	-	-	-	-	23	-
	2018	-	-	-	-	6	-
	2019.8월	1,000	-	155	1,155	43	미정

주: 1. 실제 보급물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기준

2. 일부 불용으로 인해 실제 보급물량 및 다음연도 이월물량의 합과 총 보급계획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의 지원 예산과 계획물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일부 인기차종의 출고물량의 제약 및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거나, 민간의 구매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물량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2017년까지는 연례적으로 계획된 물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였으나, 2018년 3월 신형 모델의 출고가 시작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확대된 659대의 계획물량을 초과한 총 712대가 보급되는 등 집행실적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본예산을 통해 2018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된 1,42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수송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면서 2019년 추경예산에서는 더욱 확대된 보급계획물량과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기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2019년 총 보급계획물량 5,518대<sup>7)</sup> 중 2,053대만이 보급되었으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버스 보급 사업 또한 2019년 8월말 현재 전국에 6대만이 시범운행<sup>8)</sup> 중으로 연도내에 모든 물량을 보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 보급현황]

(단위: 대)

차종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수소연료 전지차	2017	130	14	-	144	51	85
	2018	159	104 <sup>1)</sup>	500	763	712	51
	2019.8월	4,000	51	1,467	5,518	2,053	미정
수소버스	2019.8월	35	-	2	37	6	미정

주: 1) 차량가격(2018년 '넥쏘' 출시) 인하에 따른 보조금 단가조정(27.5백만원 → 22.5백만원)으로 지원대수 조정(85대 → 104대)

1. 실제 보급물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기준
2. 일부 불용으로 인해 실제 보급물량 및 다음연도 이월물량의 합과 총 보급계획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지연, 최근 발생한 수소 관련 안전사고<sup>9)</sup>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구축 일정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 현재 환경부가 투입한 예산으로는 총 11개소만이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7) 2019년 본예산 계획물량 4,000대와 추가경정예산 반영물량 1,467대 및 전년도 이월물량 51대를 합한 전체 보급계획물량이다.

8) 2019년 8월말 기준 수소버스는 서울 1대, 부산 1대, 울산 1대, 경남(창원) 3대 등 총 6대만이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2019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정부는 동 사고가 규격화하지 않은 수전해 연구실험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소자동차나 수소충전소와는 다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6월 10일에는 노르웨이 넬(NEL)사의 수소충전소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고압저장장치(수소탱크)에 연결된 특정 플러그가 잘못 조립되어 누출된 수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 수소충전소 내 고압저장장치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소누출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2019년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예산	목표	실적		설치·운영시점
			설치중	완료	
2016	6,000	4	-	4	'17.3월, '17.9월, '18.3월, '18.9월
2017	15,000	2	-	2	'18.11월, '19.1월
2018	15,000	16	13	3	'19.4월, '19.5월(2개소)
2019.8	45,000	30	30	-	-

주: 지자체보조사업 32개소는 '19년 8월 31일 현재 부지선정 등은 완료된 상태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준공예정이며, 11개소는 공모 평가가 완료된 상태임  
자료: 환경부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의 지연으로 인해 충전소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 충전인프라 환경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들은 계약 체결 후에도 차량 출고일자를 연기하고 있어 계약 건수 대비 실제 출고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 72건이 모두 보급되었으나, 2018년은 총 4,794건의 계약 건수 대비 727건의 출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의 경우 9월까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이 8,187건 체결되었으나,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 기준 2,599대에 그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연간 생산 및 공급현황]

(단위: 대)

구분	생산계획	계약 건수	출고 건수
2017	130	72	72
2018	843	4,794	727
2019	5,500	8,187	2,599

주: 2019년은 9월말 기준 계약 및 출고 건수  
자료: 현대자동차 제철 자료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과 보급계획물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차종의 출고물량 제약 및 출고지연, 민간의 구매수요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2-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 가. 현황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총 2조 3,8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결산 기준 8,633억원, 2019년 추경예산 2조 1,787억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 중 국내배출감축 분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94.1%인 2조 2,404억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확대에 의해 수송 부문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1조 87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9.3%이며, 전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기준으로 로도 약 45.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		2018년 결산		2019년 추경		2020년 정부안	
			비중		비중		비중
국내 배출 감축	발전 부문	5,770	0.7	-	-	-	-
	산업 부문	24,624	2.9	217,118	10.0	339,189	14.2
	수송 부문	<b>693,739</b>	<b>80.4</b>	<b>1,567,603</b>	<b>72.0</b>	<b>1,719,073</b>	<b>72.2</b>
	- 도로	669,509	77.6	1,412,153	64.8	1,568,491	65.9
	- 비도로	24,230	2.8	155,450	7.1	150,582	6.3
	생활 부문	39,535	4.6	248,901	11.4	182,146	7.7
	소계	763,668	88.5	2,033,622	93.3	2,240,408	94.1
국제협력		11,523	1.3	18,629	0.9	20,282	0.9
민감계층보호		17,271	2.0	21,286	1.0	20,359	0.9
정책기반강화		70,812	8.2	105,138	4.8	99,779	4.2
<b>합계</b>		<b>863,274</b>	<b>100.0</b>	<b>2,178,675</b>	<b>100.0</b>	<b>2,380,828</b>	<b>100.0</b>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자동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유버스와 화물차, 이륜차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차종<sup>10)</sup>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동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친환경차량 보급에 투입된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은 1톤당 약 50 억원이 투입되어 톤당 감축비용이 7,600만원과 1,500만원 수준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비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sup>11)</sup>

[재정투입과 미세먼지 감축량]

(단위: 톤, 백만원, %)

분야	감축 대책	2014 배출량	2022 목표 감축량	2018 감축실적 (A)	2018 집행액 (B)	톤당 감축비용 (B/A)
전 체 (2014년 배출량 대비 감축량 비율)		324,109 (100)	116,115 (35.8)	30,552 (9.4)	1,171,615	38
수송	친환경차 보급 확대	39,005	1,432	102	513,851	5,038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 및 운행제한 확대		7,562	1,792	136,949	76
	건설장비 배출저감	19,633	5,392	1,640	24,230	15

주: 1. 2018년도 감축량 산정 과제에 대응하는 예산 집행 현황으로 국내배출량 감축분야 2018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수송 분야 중 일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2019. 9.

10) 노후화된 경유버스와 화물차 등은 대부분 Euro3(2000년 적용) 이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질소산화물(NOx)은 12.5배, 미세먼지는 10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2019. 9.

물론,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함께 내포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에 집중하기 보다는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자원투입 대비 저감 효과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지원된 보조금 효과로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전기승용차 79,459대, 전기버스 1,853대, 전기화물차 9,729대, 전기이륜차 13,255대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전기차 모델의 출시, 충전기반 확대, 세제 혜택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수요조사 결과]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추경 편성 시	본예산 편성시	추경 편성 시	예산안 편성 시
전기승용차	49,630	8,539	52,907	-	79,459
전기버스	282	51	529	328	1,853
전기화물차	-	-	1,105	155	9,729
전기이륜차	5,000	-	10,000	-	13,255

자료: 환경부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공급(예정) 물량 현황]

(단위: 대)

제조 판매사	2018			2019			2020		
	승용	버스	화물	승용	버스	화물	승용	버스	화물
계	29,378	528	70	37,530	1,210	3,700	62,750	7,330	21,700
현대	18,048	150	0	20,000	300	500	32,000	4,500	10,000
기아	5,100	0	0	8,050	0	0	16,000	0	7,000
기타	6,230	428	70	9,480	910	3,200	14,750	2,830	4,700

자료: 환경부

특히, 최근 6년간(2013~2018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0.01%(2,775대)에서 2018년 말 기준 0.24%(55,756대)로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12.3% 수준으로 아직 도입 초기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2014~2018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등록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총계	20,117,955 (100)	20,989,885 (100)	21,803,351 (100)	22,528,295 (100)	23,202,555 (100)	3.6
전기자동차	2,775 (0.01)	5,712 (0.03)	10,855 (0.05)	25,108 (0.11)	55,756 (0.24)	112.3
수소연료 전지차	-	29 (0.00)	87 (0.00)	170 (0.00)	893 (0.00)	240.2

주: 연도말 현황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단가 및 관련 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큰 편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국비 지원금을 2018년 최대 1,200만원에서 2019년 900만원, 2020년 예산안에서는 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비율은 세계 적용 전 차량가격의 약 47%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 세제감면을 합쳐 15~17%인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13)</sup>

12)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2019 전기차 전망(Electric Vehicle Outlook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가격 하락과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2025년에는 1,000만대 돌파하고, 2030년 2,800만대, 2040년에는 5,60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3) 미국의 경우, 2019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일몰됨에 따라 대표적 업체인 TESLA가 대규모 가격 인하 및 비용 감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세제혜택 적용전 가격 (부가세 포함)	48,760	48,825	29,311	41,365	40,034	
세제 혜택	세제감면	2,860	3,406	714	-	-
	세금환급	-	-	-	-	-
	소계	2,680	3,406	714	0	0
구매 보조금	중앙정부	14,000	3,392	2,693	6,488	3,709
	지방정부	6,000	1,696	1,530	-	2,472
	소계	20,000	5,088	4,223	6,488	6,181
세제 및 보조금 합계	22,860	8,494	4,937	6,488	6,181	
실제 구매가격	25,900	40,331	24,374	34,877	33,853	
구매지원 보조율	46.9	17.4	16.8	15.7	15.4	

주: 2017년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한국생산성본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 2017. 6.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등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1

###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가. 현황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sup>1)</sup>은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1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 광역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	-	-	1,980	1,980	순증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사업구상을 마련한 이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불법수출·불법투기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18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 1월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2월 제69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8

특히,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발생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의 공공관리 강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즉, 긴급하고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필요한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및 재난폐기물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 주도로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2월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각종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민간처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 4개 권역에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단계적인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2020년도 예산안에는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후보지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기본구상 등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 1,980백만원</li> <li>-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동 처리시설 설치지역 후보지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에 드는 비용</li> <li>· 12개 지역(4개 권역 × 3개 지역) × 165백만원 : 1,980백만원</li> </ul>
---

자료: 환경부

특히, 광역공공처리시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이익공유가 가능하도록, ① 시설 설치비용의 10%를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며, ② 설치지역 및 인접 지자체 거주 주민은 해당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의 운영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sup>2)</sup>

동 사업은 기초적인 구상 단계로 총사업비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

2) 2019년 3월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의안번호 2021686, 발의일자 2019년 7월 26일)이다.

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제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면,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및 보관시설 등이 모두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시설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할 경우 1개 권역에 2,26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개요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시설비		부지매입비
		소각시설	매립시설	
<b>계</b>	<b>226,061</b>	<b>118,796</b>	<b>43,404</b>	<b>63,861</b>
공사비	146,414	107,389	39,025	165,289㎡×386,365원/㎡ (17~18년 산업단지 평균 분양단가 적용)
설계비	7,296	5,124	2,172	
감리비	7,110	4,986	2,124	
시설부대비	357	274	83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한 기초구상 마련과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구상안에 제시된 예산이 2,260억원대 규모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동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4)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사업을 의미하는바, 동 사업의 근거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5)</sup>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법령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환경부는 동 사업의 기초 사업구상을 위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19년 10월 8일자로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실태조사와 기초적인 사업구상을 완료한 이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7. 생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5) 참고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9년 7월 26일자로 발의된 이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 6)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검토할 단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가. 현황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sup>1)</sup>은 주요 상수원이나 수계 중 녹조 또는 맛·냄새 유발물질 등 복합적인 이상수질 발생 등으로 인해 고도정수가 필요한 기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sup>2)</sup>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지방정수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보조와 용자금 지원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방) 사업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및 설계비를 국고 출자(30%)로 지원하는 예산 45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	-	-	4,517	4,517	순증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과거 낙동강 폐놀사태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94년 마련한 수질 관리개선대책에서 처음으로 광역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수립 및 2015년 변경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지침, 2019.5)에 따라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3개소,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7개소, 낙동강수계 2개소 등 총 12개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5033-346

2)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응집·침전, 여과(완속 또는 급속), 소독 공정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존, 활성탄, 고도산화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추진 계획]

수 계	광역상수도 정수장(생활용수)		
	전체	도입완료	도입계획
계	38	12	12 (확장 2건 포함)
한 강	11	8(맛·냄새 제거)	3 (맛·냄새, 규조류 제거)
금강·영산강·섬진강	15	-	7 (맛·냄새, 규조류 제거)
낙동강	12	4 (미량유해물질, 맛·냄새 제거)	2 (맛·냄새, 규조류 제거)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 예산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각 수계별 광역상수도 정수장 1개소를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지정수장에 대해서는 1차년도 공사비 및 관리비 36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주와 평림 및 사천정수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총 9억원을 반영하였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 2020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정수장	총사업비				산출근거
	계	공사비	설계비	관리비	
수지	47,924	45,642	- (수공 지체사항)	2,282	<b>3,617백만원</b> - 공사비 3,445백만원 * 45,642(공사비)×30%(국고비율)×25%(1차년도, 공사착수 및 토공 등) - 관리비((공사비+설계비)×5%) 172백만원
청주	82,950	75,800	3,200	3,950	<b>400백만원</b> - 설계비 381백만원 * 3,200(설계비)×30%(국고비율)×40%(1차년도) - 관리비(설계비×5%) 19백만원
평림	9,240	8,400	400	440	<b>100백만원</b> - 설계비 95백만원 * 400(설계비)×30%(국고비율)×70%(1차년도) - 관리비(설계비×5%) 5백만원
사천	79,905	73,000	3,100	3,805	<b>400백만원</b> - 설계비 381백만원 * 3,100(설계비)×30%(국고비율)×40%(1차년도) - 관리비(설계비×5%) 19백만원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 이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규정된 수질조사와 대안검토, 모형실험 등 사전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적용범위, 도입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상시설의 범위(제2조)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검토대상(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3등급인 경우 또는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li> <li>2.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과 같은 수계에 있으면서, 당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li> <li>3.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원수에 유입되는 경우 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보완하는 경우</li> <li>4.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먹는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경우</li> <li>5. 환경부장관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검토를 요청한 경우</li> </ol>
시설도입 절차(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수질 기초자료 수집</li> <li>2.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여부 및 각종 대안 검토</li> <li>3.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사전 모형 실험 및 수치해석</li> <li>4.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사업 시행</li> </ol>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4개 정수장 중 평림정수장과 사천정수장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절차를 미흡하게 실시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 수질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취수원 수질개선 가능성이나 취수원의 변경 가능성, 인근 정수장 간 연계 운영 등 각종 대안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 실험 및 파일럿 실험 등 모형실험 수행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지정수장과 청주정수장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수년간 수집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자료 분석이 이루어졌고, 수질개선 및 취수원 변경 가능성, 인근 정수장과의 연계 가능성 등 대안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검토 시 실증 및 모형실험을 완료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또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평림정수장과 사천정수장의 경우, 기초자료 수집과 대안검토 단계만을 완료한 상황이며, 특히 대안검토 절차는 1999년 전남서부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수립 및 1993년 남강II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검토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현재 시점에서의 대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정결정을 위한 모형실험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록 2019년 5월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모형실험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sup>3)</sup> 사전 실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고도정수처리 공정결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3)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주1) 같은 수역내의 기존자료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험실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주2) 파일럿 실험은 실험실 실험 결과와 원수수질의 변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거쳐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 도입절차 수행 현황]

구분	수질검사	대안검토	모형실험
수지정수장	2025 수도정비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질 분석 수행	2025 수도정비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검토 수행	수도권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검토 시 모형실험 완료 ('03~'10년)
청주정수장	2025 수도정비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질 분석 수행	2025 수도정비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검토 수행	금강수계 및 천안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검토 시 모형실험 완료('13~'16년)
평림정수장	정기적인 수질검사 자료 ('11~'18년) 분석 수행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수립 시('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모형 실험 추진 예정
사천정수장		남강II광역상수도 예비 타당성조사 시('0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모형 실험 추진 예정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수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정수처리 공정 선정과 설계인자 도출을 위해 설계 과정 중 사전 모형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관리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설정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지표는 광역상수도 공급실적, 광역상수도 가동률,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광역상수도 공정률이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자체로 정수수질 개선효과가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수질개선 여부는 시설 설치 완료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대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성과지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정수장 시설용량 비중)을 활용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성과지표]

(단위: 백만톤/년, %, km)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광역상수도 공급실적	목표	2,970	2,990	3,030	3,070	2,935	연간 광역상수도 공급실적
	실적	2,915	3,039	3,037	-	-	
	달성도	98.1	101.6	100.2	-	-	
광역상수도 가동률	목표	68.5	70.0	73.2	75.3		(일최대공급량/ 시설용량)×100
	실적	69.4	72.6	74.9	-		
	달성도	69.8	103.7	102.3	-		
광역상수도 안정성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6.4	연간 광역상수도 안정화 실적 (노후관 개량 및 관로 안정화)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광역상수도 공정률	목표	신규	43.4	47.0	48.9	51.1	(당해년도까지 누적사업비/ 총사업비)×100
	실적	신규	44.1	47.0	-	-	
	달성도	-	101.6	100.0	-	-	

자료: 환경부

하지만 동 사업의 목적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6조 및 별표 1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항목]

원수 수질검사 항목	정수 수질검사 항목	조사주기
TOC	TOC	주 1회 이상
UV254	UV254	
색도	색도	
탁도	탁도	
맛·냄새	맛·냄새	
소독부산물생성능(THMFP, HAAFP)	소독부산물생성능(THMFP, HAAFP)	2주 1회 이상
-	소독부산물	
합성유기물질	합성유기물질	
마이크로시스틴-LR	마이크로시스틴-LR	
병원성미생물	병원성미생물	분기 1회 이상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이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맛·냄새 유발 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막여과 등의 공정을 조합하여 추가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시설 설치 이후에도 각 공정별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간 중에는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광역정수장의 고도도입 필요성과 적기 도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sup>5)</sup> 사업 후 고도정수처리 공정별 수질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사업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국정과제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서 고도정수처리공정 목표 도입율을 설정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대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대기개선 추진대책<sup>1)</sup>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도시비산먼지저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중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6,818억 800만원 대비 791억 500만원(11.6%) 감액된 6,02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182	257,430	938,451	968,662	30,211	3.2
<b>운행차배출가스저감</b>	161,985	188,133	681,808	602,703	△79,105	△11.6
- 조기폐차	86,127	120,704	361,904	289,618	△72,286	△20.0
-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부착	43,458	22,212	140,732	138,285	△2,447	△1.7
- LPG엔진개조	471	839	839	609	△230	△27.4
-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4,485	18,500	18,500	18,495	△5	0.03
-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5,860	9,475	33,000	33,000	0	0.0
- 건설기계 엔진교체	13,885	11,250	103,950	99,000	△4,950	△4.8
-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7,699	3,253	12,883	3,696	△9,187	△71.3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1,900	10,000	20,000	10,000	100.0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운행제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2019년 추경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정된 단가 및 보조금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상향조정하였다.<sup>2)</sup>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부 경유차 감축 목표(22년까지 136만 대 조기폐차)에 따른 연차별 계획 물량(30만대)을 반영하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80,003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10,000대) 및 저감장치 부착(5,000대), 운행제한지역시스템 구축(카메라 187대, 단속서버 1식) 등은 연차별 계획 물량 및 지자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공급 물량을 현실화하였다. 특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와 제작사의 공급능력(1만대) 및 「대기관리권역법」 개정<sup>3)</sup>으로 인해 LPG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량을 확대하였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단가, 보조율, 물량 비교]

(단위: 백만원, %, 대)

구분	단가	보조율	2019년		2020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조기폐차	1.608백만원	60%	150,129대	400,129대	300,185대	△99,944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2.963백만원 →3.457백만원(20년)	50%	14,993대	94,993대	80,003대	△14,990
건설기계 엔진교체	16.5백만원	60% (자부담 0%)	1,500대	10,500대	10,000대	△500
건설기계 DPF 부착	11백만원	60% (자부담 0%)	1,895대	5,000대	5,000대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4백만원	50%	950대	5,000대	10,000대	5,000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37백만원	50%	감시카메라 174개	554대	187대	△367
	400백만원		단속서버 0식	13식	1식	△12

자료: 환경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루어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60%) 및 자부담 완화 조치를 유지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의 증액된 보조금 또한 유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3)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3년부터는 경유 택배화물차의 등록이 금지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의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2014년 배출량 32.4만톤 대비 35.8% 감축)를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통해 수립한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동 내역사업의 계획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2018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하였던 보급물량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노후경유차 LPG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말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유형별 실적 달성률이 모두 50% 미만으로 나타나 연도 내에 충분한 보급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집행 실적(물량)]

(단위: 대, %)

구분	2018		2019.8				
	계획	실적	계(A)	계획		실적(B)	달성률(B/A)
				본예산	추경		
조기폐차	116,169	119,541	400,129	150,129	250,000	160,033	40.0
저감장치부착	14,993	20,536	94,993	14,993	80,000	25,035	26.4
LPG엔진개조	500	214	482	482	0	149	30.9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3,000	554	2,466	2,466	0	1,059	42.9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1,895	1,223	5,000	1,895	3,105	486	9.7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0	1,901	10,500	1,500	9,000	987	9.4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304	179	174	174	0	0	0.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	5,000	950	4,050	1,186	23.7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신청접수부터 실제 집행까지 접수된 물량에 대한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며, 제작사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계획된 물량을 보급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의 집행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과 공급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도하게 편성된 내역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2015년까지 구분된 3개 세부사업(‘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을 병합

하여 2016년부터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으로 편성·운영한 이후, 2017년부터 ‘대기개선 추진대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세부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 기준 총 26개의 내역사업(2019년도 예산현액 9,437억 6,200만원, 2020년도 예산안 9,686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지라도 환경부 소관 타 세부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등은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중 대규모 내역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조기폐차	수송	361,834	289,618
저감장치부착		140,732	138,280
LPG엔진개조		839	609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18,500	18,582
건설기계 저감장치(DPF)부착		33,000	33,000
건설기계 엔진교체		103,950	99,000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0,000	20,00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산업	109,835	220,000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8,600	14,930
사업장총량관리제 운영		6,261	17,126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11,580	7,026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생활	48,150	21,6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6,000	51,000

주: 2019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 사업들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사업내용의 변경 여부, 집행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대기개선 추진대책이라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되고 있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경과 등을 외부에서 검토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담당 부서 또한 사업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sup>4)</sup>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내역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성 있는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수송·산업·생활 등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유형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4) 또한,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동 사업은 총 26개의 내역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내역사업과 관련된 4개 성과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어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 가. 현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sup>1)</sup>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도 및 운영관리정보시스템(EcoAS)을 운영하고, 민간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전까지 태양광 폐모듈 및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할 수 있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1억 5,400만원 대비 114억 9,700만원(533.8%) 증액된 13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1,865	2,154	2,154	13,651	11,497	533.8
재활용시스템 구축운영	1,865	1,889	1,889	1,836	△53	△2.8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운영	-	265	265	11,815	11,550	4,358.5

자료: 환경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태양광 발전비중의 증가로 인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sup>2)</sup>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sup>3)</sup> 이에 대한 수거체계 및 처리기준 등 재활용체계<sup>4)</sup>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사용·재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1-304
- 2) 미래폐자원이란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 생산되고 사용되었다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각종 유용한 재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폐이차전지 등이 대표적인 미래폐자원에 속한다.
- 3) 폐기물 발생 추정량(출처: 환경부)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19.6월) 113대(실적) → ('20년) 1,464대 → ('22년) 9,155대
  - (태양광 폐패널) ('18년) 262톤(실적) → ('20년) 89톤 → ('23년) 2,625톤 → ('30년) 12,887톤

활용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폐패널과 폐배터리를 소각 또는 매립처리 하거나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패널과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에 대한 재활용기술의 미비 및 처리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제약이 존재하고 관련 제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므로, 환경부는 민간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전까지 미래폐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권역별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본예산을 통해 건축공사 설계가 진행 중인 수도권 거점수거센터의 건축공사비와 시설공사비 20억 7,500만원, 영남권·호남권·충청권 거점수거센터에 대한 설계비 3억 5,000만원과 공사비 47억 2,500만원, 권역별 거점수거센터에 대한 장비구축비 40억 4,000만원,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및 R&D 연구용역비 3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11,8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권·호남권·충청권 센터 설계비 350백만원</li> <li>- 수도권 센터 구축비 2,075백만원</li> <li>- 영남권·호남권·충청권 센터 구축비 4,725백만원</li> <li>- 장비 구축비 4,040백만원</li> <li>- 시범사업 및 R&amp;D 연구용역비 300백만원</li> <li>-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관리비 325백만원</li> </ul> </li> </ul>
--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절차와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점수거센터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로드맵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19.7~20.1)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 재활용 인프라 구축, 품목·업종 확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3항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반납 및 처리 기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 등의 단계를 거쳐 미래폐자원 순환사회 구축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단계 사업을 통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도권 거점수거센터 설계를 추진하며, 2020년 2단계 사업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4개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2021년 3단계 사업을 통해 거점수거센터를 정상운영하며 처리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로드맵(예시)]

구분	세부내용
1단계 사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로드맵 구축</li> <li>-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li> <li>- 수도권 거점수거센터 설계</li> </ul>
2단계 사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li> <li>- 영남권·호남권·충청권 센터 설계</li> <li>-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4개 권역별 센터 구축</li> <li>-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및 R&amp;D 연구용역</li> </ul>
3단계 사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정상운영, 연관산업 육성</li> <li>- 4개 권역 센터 정상운영 및 거점수거센터 처리품목 확대</li> </ul>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소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경기도 화성시의 수원사업소, 영남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대구사업소,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광주2사업소, 충청권은 청주시 청원군 청주공장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대상 부지선정 현황]

구분	주소	전체 면적(㎡)		활용가능 면적(㎡)		소유주체
		부지	건물	부지	건물	
수도권	경기도 화성시	8,440	155	5,440	155	환경부
영남권	대구시 달서구	5,000	-	4,000	-	공단
호남권	광주시 광산구	14,375	165	12,375	165	환경부
충청권	청주시 청원군	9,315	-			공단

자료: 환경부

하지만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의 설계용역 입찰은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지연으로 인해 2019년 10월 5일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 용역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이후 설계가 완료되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 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2020년 말이 되어서야 완공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거점수거센터 설계에 약 4개월, 시공에 약 6개월 등 센터 준공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수도권 센터 외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모두 편성하였는바,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내에 거점수거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일정 및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4개 권역별 거점수거센터에서 운영할 트럭과 지게차, 보관랙, 잔존가치평가장비 등 장비구축비를 모두 편성하였으므로, 거점수거센터의 구축 및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구축 관련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상용화된 재활용기술 및 전문 재활용업체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관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증가에 따라 보관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를 통한 회수·보관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재활용 업체 육성 등을 통해 재사용·재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하는 폐배터리 및 폐패널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sup>1)</sup>은 일평균 천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역사·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sup>2)</sup>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850억 1,300만원 대비 319억 6,700만원 감소한 53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0	19,998	85,013	53,046	△31,967	△37.6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0	11,500	11,500	0	△11,500	△100.0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0	4,038	8,533	11,288	2,755	32.3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0	4,460	9,790	260	△9,530	△97.3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0	0	9,311	9,140	△171	△1.8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0	0	0	2,399	2,399	순증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0	0	43,200	19,440	△23,760	△55.0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0	0	2,679	10,519	7,840	292.6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205-306
- 2) 국고보조율은 서울특별시 30%, 5대 광역시 및 민간도시철도운영기관은 40%이며, 지자체가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국비와 지방비를 지하철공사 등 2차 집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며,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보조금의 재교부 없이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최근 지하역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수립하고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지하역사 내 환기설비 교체, 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및 노후역사 환경개선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통해 설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저감 목표<sup>3)</sup> 달성을 위하여 지하역사와 터널, 차량 등 주요 과제별로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역사 내·외부 오염도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53,046백만원
- 역사 미세먼지 저감	23,087백만원
·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260백만원 (13대×50백만원×보조율)
·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11,288백만원 (335대×40~600백만원×보조율)
·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9,140백만원 (3,968대×6.6백만원×보조율)
·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구축	2,399백만원 (20대×400백만원×보조율)
- 터널 미세먼지 저감	19,440백만원
·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9,440백만원 (187대×300백만원×보조율)
- 차량 미세먼지 저감	10,519백만원
·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10,519백만원 (5,032대×6백만원×보조율)

주: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자체 및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은 40% 적용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물량이 이월될 경우,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수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역사와 지하철<sup>4)</sup>의 공

3) 2022년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69.4 $\mu\text{g}/\text{m}^3$ 에서 60 $\mu\text{g}/\text{m}^3$ 로 13.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4) 지하역사와 지하철은 외부공기 유입을 통한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는 경우가 많아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높은 오염도 수준(69.4 $\mu\text{g}/\text{m}^3$ )을 보이고 있다.

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 → 100 $\mu\text{g}/\text{m}^3$  이하)하고, PM2.5는 유지기준<sup>5)</sup>으로 신설(50 $\mu\text{g}/\text{m}^3$  이하)하는 등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잠정목표 2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

시설군		PM10( $\mu\text{g}/\text{m}^3$ )	PM2.5( $\mu\text{g}/\text{m}^3$ )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75	35
일반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 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공항시설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업	100	50

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은 2018년 10월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자료: 환경부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sup>6)</sup>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sup>7)</sup>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측정망 설치, 환기설비 개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통해 지하역사와 지하철 차량 및 터널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 5)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권고기준과는 달리,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추경예산이 본예산 199억 9,800만원의 4배를 넘는 850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이를 연내에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20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15,046	31,355	31,355	31,309 (16,309)	99.9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1,252	14,690	14,690	14,690 (13,438)	100.0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	2,120	11,875	11,875	11,875 (9,755)	100.0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660	7,614	7,614	7,614 (6,954)	100.0
광주시 (광주도시철도공사)	720	2,129	2,129	2,129 (1,409)	100.0
대전시 (대전도시철도공사)	200	1,082	1,082	1,082 (882)	100.0
㈜공항철도	0	209	209	0	0.0
서울 9호선	0	15,620	15,620	0	0.0
신분당선	0	240	240	0	0.0
SR	0	198	198	0	0.0
합계	19,998	85,013	85,013	68,699	80.8

주: ( )는 2019년 추경예산 집행액, 실집행률은 2019년 10월 15일 기준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15일 기준 전체 추경예산 850억 1,300만원 중 80.8%인 686억 9,900만원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역사업별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2019년 추경예산의 집행완료 시기를 추정할 경우, 일부 내역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8)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 집행관련 실무대책회의와 지속적인 집행점검 회의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집행현황 및 완료 예상 시점]

내역사업	'19.12월 기준 예상되는 사업 집행현황	'19년 추경예산 집행완료 예상 시점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20.9월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완료	'20.6월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완료	'20.6월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완료	'20.6월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20.10월

자료: 환경부

특히,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다른 내역사업<sup>9)</sup>과 달리 사업기간<sup>10)</sup>이 12개월에 달한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 내역사업은 지하철이 운행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이 종료된 시간(24시~익일 4시)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7년 환경부가 추진한 지하철 터널 내부의 석면제거 공사의 경우, 약 21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기간<sup>11)</sup> 한정된 작업시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액 83억 300만원 중 29억 2,600만원만이 실집행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 소요기간, 제한된 작업시간 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될 예산 및 물량의 규모를 고려하여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연도 내에 공급 가능한 물량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예산안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9) 환경부는 다른 내역사업인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사업’,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사업’, ‘지하철 차량 대상 공기질 개선장치 사업’ 등의 경우 사업기간을 6개월로 추정하고 있다.

10) 사업기간(12개월) : 설계용역(2개월) → 계약심사 및 계약(2개월) → 납품 및 공사(8개월)  
\* 작업공정 : 자재반입 → 그레이팅 보양작업(합판 보강) → 집진기 기초 골조작업 → 집진설비 설치 → 부속설비(배관, 전선 등) 설치 및 마무리 공사

11) 사업기간(21개월) : 설계용역(5개월) → 공사계약 심사 및 공사계약(3개월) → 뿔칠제거 공사\*(13개월)  
\* 작업공정 : 작업장 밀폐 → 기존설비(기계, 전기, 통신 등) 해체 → 뿔칠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작업 → 설비 설치 및 마무리 공사 등

### 가. 현 황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sup>1)</sup>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25조제2항<sup>2)</sup> 등에 따라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국고로 지원<sup>3)</sup>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393억 6,000만원 대비 277억 2,300만원(70.4%) 증액된 670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34,101	39,360	39,360	67,083	27,723	70.4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물량(19,878동)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31,500동을 편성하고, 지원금액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동당 최대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은 2019년과 동일한 3,949동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원금액을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206-305

2)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며, 가구당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로 증액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기존까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200동에 대한 철거 지원 예산(44억 7,2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0년도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67,083백만원
■ 산출내역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1,500동 × 동당 344만원 × 50% = 54,180백만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3,949동 × 동당 427만원 × 50% = 8,431백만원
-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200동 × 동당 172만원 × 50% = 4,472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사업 중 하나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4) 및 시행('12.4), 제1차 및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총 52만동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동)

연도	'18~'22					'23~'30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물 량	20,298	19,878	31,500	40,000	37,000	35,000	33,000	33,000	31,000	28,000	27,000	27,000	26,000
누 계	153,000 <sup>1)</sup>	173,778	216,278	245,278	282,278	317,278	350,278	383,278	414,278	442,278	469,278	496,278	522,278

주: 1) '18년도 누계는 '17년 계획수립 당시 예측물량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철거 누계(160,149동)와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자체별 물량이 확정된 이후 사업 공고를 진행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며, 공사 완료 후 면적조사서와 슬레이트 해체 작업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말 현재 16,328동(전체 계획 대비 82.1%)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여 목표 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집행 실적(동)]

(단위: 동)

구분 (지자체)	2017		2018		2019(8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20,300	27,807	20,298	26,547	19,878	16,328
서울	30	26	30	23	23	15
부산	1,200	1350	1,200	1,240	1,058	699
대구	140	262	140	250	136	123
인천	170	231	170	327	166	100
광주	230	445	215	470	210	181
대전	120	228	120	199	117	106
울산	100	144	100	127	87	130
경기	1,400	1,728	1,400	1,612	1,390	1,126
강원	2,070	2,777	2,070	2,704	2,028	1,778
충북	1,400	1,965	1,398	1,920	1,493	1,269
충남	1,600	2,100	1,600	2,215	1,547	1,365
전북	1,800	2,688	1,800	2,436	1,852	1,687
전남	3,100	4,573	3,100	4,203	3,037	2,654
경북	3,080	4,285	3,095	4,392	3,032	1,864
경남	2,970	3,986	2,970	3,818	2,910	2,564
제주	800	903	800	480	705	589
세종	90	116	90	131	87	78

자료: 환경부

하지만 2019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8월말 현재 계획하였던 물량 총 3,949동 중 270동만이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과는 달리 자부담 비용(50%)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행 실적(동)]

(단위: 동)

구분 (지자체)	2017		2018		2019(8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60	-	66	3,949	270
서울	-	20	-	16	4	4
부산	-	12	-	12	210	58
대구	-	-	-	-	27	1
인천	-	3	-	-	32	-
광주	-	-	-	-	50	-
대전	-	-	-	-	21	-
울산	-	-	-	1	17	2
경기	-	-	-	13	276	17
강원	-	1	-	2	402	7
충북	-	-	-	-	296	25
충남	-	-	-	-	307	18
전북	-	1	-	-	367	37
전남	-	-	-	2	603	36
경북	-	23	-	20	602	31
경남	-	-	-	-	578	34
제주	-	-	-	-	140	-
세종	-	-	-	-	17	-

주: 2017년과 2018년은 지방비 추가편성 및 철거 예산의 집행잔액을 사용한 개량 실적임  
자료: 환경부

4)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지붕개량 자부담 비용을 현행 50%(최대 지원금액 302만원)에서 30%(최대 지원금액 427만원)로 축소하였으므로, 사업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유지되고 있는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처리와 개량이 어려운 저소득·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지붕 개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사업 신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국고업무처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취약계층 사업대상자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sup>1)</sup> 중 생활오염원 관리를 위한 내역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sup>2)</sup>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50억원(41.7%) 증액된 5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182	257,430	938,451	968,662	30,211	3.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1,000	2,400	36,000	51,000	15,000	41.7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총 30만대로 대폭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72만원)와 일반보일러(52만원) 차액(2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 단가와 상향된 국고보조율(60%)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저녹스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미한다. 특히, 저녹스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평균 30ppm 정도로 일반보일러(평균 173ppm)에 비해 1/6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며, 열효율 또한 높아 연간 약 13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예산	
총 예산액	2,400백만원	36,000백만원	51,000백만원
지원대수	30,000대	300,000대	(일반) 300,000대
			(저소득층) 50,000대
1대당 지원액	16만원(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 차액의 80%)	20만원(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 차액 전액 지원)	(일반) 20만원(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 차액 전액 지원)
			(저소득층)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상향)
지원조건	국비 50%(8만원) 지방비 50%(8만원)	국비 60%(12만원) 지방비 40%(8만원)	(일반) 국비 60%(12만원) 지방비 40%(8만원)
			(저소득층) 국비 60%(30만원) 지방비 40%(20만원)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차액지원분	-	1,200백만원 (단가와 보조율 차액 지원)	-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점검, 사업절차의 개선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 내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의 유통·판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과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만대 물량에 더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만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수요조사 현황]

(단위: 대)

구분	지원계획	수요조사	노후보일러
계	350,000	340,205	4,789,807
서울특별시	325,265	319,000	907,991
부산광역시	933	800	527,588
대구광역시	2,333	2,000	226,454
인천광역시	2,800	2,400	279,929
광주광역시	1,983	1,700	181,297
대전광역시	1,750	1,500	225,575
울산광역시	933	800	200,783
경기도	7,515	6,442	944,647
강원도	770	660	117,373
충청북도	583	500	108,893
충청남도	1,423	1,220	212,360
전라북도	991	850	220,064
전라남도	884	758	126,668
경상북도	490	420	227,535
경상남도	764	655	273,518
제주특별자치도	583	500	9,132

자료: 환경부

하지만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각각 2.0%, 2.7%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전반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2019년에 계획된 보급물량 중 일정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예산액		지자체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서울	1,168	17,384	6,000	0	18,552	364	2.0
인천	192	168	288	0	360	132	36.7
경기	554	15,517	1,118	0	16,071	428	2.7
대전	24	156	180	0	180	23.5	13.1
대구	80	40	120	0	120	44	36.7
울산	24	12	0	0	36	0	0.0
부산	64	32	96	0	96	84	87.5
광주	32	76	108	0	108	30	27.8
충북	15.6	7.8	15.6	0	23	0	0.0
충남	74.4	121.2	74.4	0	196	7.6	3.9
경북	28	14	28	0	42	7	16.7
경남	49.2	24.6	71	0	74	33.6	45.4
전북	32	16	48	0	48	7.2	15.0
전남	52.4	26.2	79	0	79	1.6	2.0
강원	10.4	5.2	10.4	0	16	3.3	20.6
합계	2,400	33,600	8,236	0	36,000	1165.8	3.2

주: 실적행률은 2019년 8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2019년 8월말 현재 서울시는 계획된 총 보급물량 154,600대 중 4,547대만이 보급되었으며, 경기도는 133,925대 중 5,208대가 보급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급물량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종합하자면, 2019년에 계획된 총 보급물량 30만대 중 약 4.7%인 14,167대만이 보급되어 연도 내에 충분한 보급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지역별 저녹스보일러 지원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9						2020 예산안 계획
	합계(A)	본예산 계획	추경 계획	전년도 이월	보급대수 (8월)(B)	실적률 (B/A)	
서울	154,600	14,600	140,000	0	4,547	2.9	325,265
인천	3,000	2,400	600	0	1,654	55.1	2,800
경기	133,925	6,925	127,000	0	5,208	3.9	7,515
대전	1,500	300	1,200	0	240	16.0	1,750
부산	800	800	0	0	705	88.1	933
대구	1,000	1,000	0	0	547	54.7	2,333
울산	300	300	0	0		0.0	933
광주	900	400	500	0	375	41.7	1,983
충북	195	195	0	0		0.0	583
충남	1,630	930	700	0	114	7.0	1,423
경북	350	350	0	0	84	24.0	490
경남	615	615	0	0	429	69.8	764
전북	400	400	0	0	60	15.0	991
전남	655	655	0	0	152	23.2	884
강원	130	130	0	0	52	40.0	770
제주	0	0	0	0	0	0.0	583
합계	300,000	30,000	270,000	0	14,167	4.7	350,000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행한 수요조사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의 유통이 의무화될 것을 고려한 결과로서, 이는 저녹스보일러 설치환경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10년)이 지난 노후보일러가 설치된 주거지의 경우, 배수구 설치 문제 등 실제 저녹스보일러 설치과정에 제약이 발생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사업절차의 개선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바탕으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저소득층 대상 수요 확보 및 사업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차액(20만원)에 그쳐 기본적인 교체비용(5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획한 5만대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구체적인 현황이나 실태조사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인구 비율(약 268만명, 총 인구의 약 5.2%)을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1,500만대 가스보일러 중 약 78만대 가량을 저소득층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 저녹스보일러로의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업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사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분히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함으로써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강화<sup>2)</sup> 등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을 통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9.3월)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2019년 추경예산에 1,09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추경예산 대비 1,101억 6,500만원(100.3%) 증액된 2,2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182	257,430	938,451	968,662	30,211	3.2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0	8,000	109,835	220,000	110,165	100.3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19.4.)되었으며,<sup>3)</sup> 연도별로 2019년 1,997개소, 2020년 4,000개소, 2021년 3,000개소, 2022년 2,987개소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20.1.1.)으로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강화될 예정이다(2020년 12월 30일까지 유예).

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해당한다.

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1,984개소, 총 사업비 1조 3,18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계획]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장(개소)	11,984	1,997	4,000	3,000	2,987
사업비(억원)	13,182	2,197	4,400	3,300	3,285

자료: 환경부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전국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공급가능물량을 고려하여 4,000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억 1,000만원<sup>4)</sup>을 지원하기 위해 5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2,200억원이 편성되었다.

## 나. 분석의견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동 사업의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월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와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미세먼지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5)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평균 30% 이상 강화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의 법령 이행과 규제 준수도 제고를 위해 2019년 계획물량 1,997개소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4,00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9년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기준 전체 예산 1,098억 3,500만원 중 약 5.8%인 63억 8,000만원만이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며, 지자체 또한 교부받은 예산 중 53.7%인 34억 2,500만원만을 실집행한 상황이다.

4) 2019년 본예산의 단가는 다양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4~5종 사업장 평균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시설당 평균단가 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9년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 예산안에서는 2017년 시화·반월 소재 20개 사업장에서 설치한 방지시설 단가를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지자체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 실집행 실적(2019년)]

(단위: 백만원, %)

사업 시행 주체 (기관명)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민간이전 기관 등)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서울	0	6,000	0	0	0	0	0	0	0	0	0
부산	1,000	3,274	480	14.7	480	0	480	432	0	0	90.0
대구	300	4,054	300	7.4	300	0	300	300	0	0	100.0
인천	1,000	8,445	1,000	11.8	1,000	0	1,000	212	0	0	21.2
광주	500	2,095	500	23.9	500	0	500	280	0	0	56
대전	0	1,127	0	0	0	0	0	0	0	0	0
울산	300	2,128	0	0	0	0	0	0	0	0	0
세종	500	1,316	0	0	0	0	0	0	0	0	0
경기	3,000	37,825	3,000	7.9	3,000	0	3,000	1,840	0	0	61.3
강원	0	2,437	0	0	0	0	0	0	0	0	0
충북	0	6,710	0	0	0	0	0	0	0	0	0
충남	0	5,998	0	0	0	0	0	0	0	0	0
전북	300	4,262	300	0	300	0	300	18	0	0	6.0
전남	300	4,260	0	7.0	0	0	0	0	0	0	0
경북	600	9,361	600	6.4	600	0	600	233	0	0	38.8
경남	200	9,599	200	2.1	200	0	200	110	0	0	55.0
제주	0	944	0	0	0	0	0	0	0	0	0
합계	8,000	109,835	6,380	5.8	6,380	0	6,380	3,425	0	0	53.7

자료: 환경부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19.8)에 제시된 동 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르면,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장 선정과 방지사설업체 선정, 지자체 주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및 사업 승인 통보에 약 2~3개월, 사업장과 방지사설 업체간 계약 체결과 방지사설 설치에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19년 추경예산의 현재까지 실집행 실적과 방지지설 설치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사업수행기간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일부 물량은 연내에 설치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수립한 연도별 방지지설 설치 계획은 전국 방지지설 시공업체(496개소)의 시공능력(설계 및 시공기간 1.5개월)을 고려하여 연간 3,968개 방지지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산정된 개소수이다. 즉, 올해 이월 물량이 발생할 경우,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반영된 지원 물량(4,000개소)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시공업체의 공급역량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지지설 업체의 연도별 시공능력]

구 분	계	2019 <sup>1)</sup>	2020	2021	2022
생산가능 물량	13,888	1,984	3,968	3,968	3,968

주: 1) 2019년은 추경예산 실집행기간 고려하여 6개월간(6~11월) 계약 건으로 산정

1. 시공업체 496개소 × {12개월/방지지설 설계·시공 기간(1.5월)}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는 등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방지지설 설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방지지설 설치 사업장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방지지설 공급 가능물량을 확보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비점오염저감사업<sup>1)</sup>은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3억 900만원이 증액된 77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비점오염저감사업	48,310	50,120	50,120	77,429	27,309	54.5

자료: 환경부

2020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사업 33개소에 627억 7,800만원, 신규사업 23개소에 146억 5,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대상 및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sup>2)</sup>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70%, 일반 지역의 경우 50%가 국고로 지원된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9년 8월말 기준 광주광역시, 평창군 도암호, 수원시, 골지천 유역, 새만금 유역, 인북천 유역 만대·가야지구,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양산시 양산천 유역,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강릉시 송천유역 대기지구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나. 분석의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는 주로 도시, 도로, 농촌지역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생원과 거리가 먼 하천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상수원 상류 또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같이 비점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sup>3)</sup>을 활용하여 실제 발생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60.1%, 2016년 67.5%, 2017년 61.1%, 2018년 63.2%로 실적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편이며, 2019년 8월말 기준 실적행률 또한 48.9%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5~2019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B/A)
2015	54,152	54,152	53,263	21,858	75,121	45,147	29,194	780	60.1
2016	58,818	58,818	57,393	29,194	86,587	58,440	27,257	890	67.5
2017	54,684	54,684	45,920	29,194	73,177	44,678	23,295	5,204	61.1
2018	48,310	48,310	48,310	23,295	71,605	45,240	24,708	1,657	63.2
2019(8월)	50,120	50,120	31,385	24,708	56,093	27,420	미정	미정	48.9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수질, 유량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당초 설치계획과 다른 내용의 시설을 설치

3)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란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킴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 기법으로,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하거나 사업물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② 설계 이후에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할 지역의 토지소유주의 변심 등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진 경우 설치 장소의 변경, 행정절차 진행(공원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토지매입 절차 진행 등)을 거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곳이 22개소로 나타났고,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곳이 9개소로 나타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결산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집행 부진(60% 미만) 지자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구분	사업시행주체						실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선군	계속	-	58	58	20	38	-	34.5
춘천시(1)	계속	2,442	3,083	5,525	3,232	2,293	-	58.5
춘천시(2)	계속	1,348	110	1,458	110	1,348	-	7.5
평창군	계속	530	-	530	-	530	-	0.0
삼척시	신규	200	-	200	102	98	-	51.2
제천시	계속	1,468	216	1,684	87	1,597	-	5.2
음성군	계속	270	224	494	-	478	16	0.0
광주광역시	계속	609	131	740	353	387	-	47.7
보성군	계속	277	1,330	1,607	435	821	351	27.1
화순군(1)	계속	620	148	768	192	576	-	25.0
화순군(2)	신규	200	-	200	99	101	-	49.5
전주시	계속	3,464	3,700	7,164	1,788	5,376	-	25.0
부안군	계속	-	636	636	250	386	-	39.3
정읍시	신규	233	-	233	93	140	-	39.9
완주군	신규	200	-	200	31	169	-	15.4
금산군	신규	200	-	200	3	197	-	1.5
당진시	신규	300	-	300	111	189	-	36.9
옥천군	계속	279	725	1,004	45	959	-	4.5
영동군	신규	300	-	300	156	144	-	52.0
영천시	계속	500	170	670	-	670	-	0.0
부산 수영구	계속	1,597	69	1,666	4	1,662	-	0.2
울산광역시	계속	1,100	22	1,122	22	1,100	-	2.0

자료: 환경부

또한, 2020년도 종료사업 중 다수의 사업이 집행 부진으로 인해 2021년 이후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종료사업 20개 중 2019년 내에 공사착공 예정인 4개 사업과 공사 등이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아직까지 부지매입 협의 또는 설계가 진행 중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도 종료사업 실집행 현황('19년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자체	총 실집행액 (총 사업비)	추진현황	2020년도 예산반영 여부
금성면(사곡) 비점오염저감사업	제천시	457 (2,997)	공사계약 추진 중 (공정률 20%)	50
비점오염저감사업	음성군	- (478)	설계 중 (공정률 3/4 사업기간 연장예정)	570
고랭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남원시	275 (275)	설계 중(~'19.9)	642
조치원을 남리 인공습지	세종시	29 (1,732)	설계 중 (부지매입협의 지연)	155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양산시	- (252)	설계 중(~'19.10)	963
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완주군	97 (2,629)	설계 중(~'19.11)	600
금산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금산군	87 (1,187)	설계 중(~'19.11)	666
석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당진시	283 (414)	설계 중(~'19.9)	170
어서실 비점오염저감사업	영동군	164 (549)	설계 중(~'19.9)	500
문화예술회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하동군	53 (53)	설계 중(~'19.11)	929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김해시	29 (50)	설계 중(~'19.12)	316
응봉유수지 저류조설치사업	서울시	- (755)	설계 중(~'19.12)	2,169

자료: 환경부

특히, 제천시와 음성군, 완주군과 금산군은 부지매입 지연 또는 설계 지연으로 인해 2018년 결산 기준 실집행률이 20% 미만으로 매우 부진하였으나, 2019년 8월 말 현재도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020년 예산이 교부된다면 연례적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잔여사업비를 전액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사착공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월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잔여공사비를 전액 배분한 총 35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이 연장되어 해당 잔여사업비가 다음연도 또는 다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잔여사업비를 전액 배분한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잔여공사비 전액 배분사업 결과]

(단위: 개)

종료예정 연도	실제종료연도					
	2016	2017	2018	2019	이월사업	합계
2016	5	2	1	-	3	8
2017		14	6	1	7	21
2018			5	1	1	6
합계	5	16	12	2	11	35

자료: 환경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해당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료 예정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잔여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지역주민과의 협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20년 종료사업 중에서도 잔여사업비의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sup>1)</sup>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sup>2)</sup>의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억 800만원이 증액된 52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5,247	32,567	32,567	52,575	20,008	61.4

자료: 환경부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 10개소에 대한 설계비 50억원과 계속사업 19개소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7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6

2) 완충저류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로 및 차단시설과 유출된 폐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저류시설 등으로 구성됨.

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국비(100%)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 3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sup>3)</sup>에 따라 수계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sup>4)</sup>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의무화되면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현황]

구 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근거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환경보전법」 <sup>1)</sup> 제21조의4
설치범위	낙동강 수계	전국(낙동강 수계 포함)
국고보조율	100%	70%
대상시설	17개	145개
설치인행 완료시설	17개	(설치 완료) 20개소 (설치 중) 19개소

주: 1) 2018년 1월 개정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자료: 환경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019년 8월말 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145개소 중 20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20개소는 설치 진행 중이나 나머지 105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는 계속사업 19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비와 더불어 신규사업 10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포함되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국고 잔여사업비 2,551억 9,200만원의 약 18.6%인 47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경우,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2017년에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90.0%로 양호하였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된 2018년은 설계 또는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177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2017~2019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9,769	9,769	9,769	500	10,269	9,240	1,029	-	90.0
2018	35,247	35,247	35,247	1,029	36,276	18,521	17,755	-	51.1
2019 (8월)	32,567	32,567	32,567	17,755	50,322	18,221	미정	미정	36.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예규 제647호, '18.12)」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별 연부율, 재정패널티를 고려한 잔여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sup>

5) 특히, 2018년 계속사업인 구미시, 순천시, 포항시 및 신규사업인 제천시 실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환경부는 전년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배분규모의 50%를 삭감하고, 2년 연속으로 실집행률이 0%인 경우 차년도 사업비를 미편성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잔여사업비 배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본예산 325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7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03억 2,200만원 중 36.2%인 182억 2,100만원만이 실집행된 실정으로, 2019년 추진된 19개 대상 사업 중 10개소에서 부지매입이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설치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할 경우 다수의 사업이 집행 부진으로 인해 2020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오염원 관리를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 정도, 부지 및 입지여건과 같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수계에 완충저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이나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을 지자체가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산업단지로 인한 사고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sup>7)</sup>

특히,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지자체, 설치 진행 중인 지자체 및 신규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상황으로, 총 145개 사업대상 중 17.2%에 해당하는 25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잔여사업비 배분 기준]

종료연도	잔여사업비 배분규모	해당 사업자
2020	잔여사업비 전액	지방자치단체
2021	잔여사업비 40%	지방자치단체
2022	잔여사업비 20%	지방자치단체
2023	잔여사업비 10%	지방자치단체

자료: 환경부

7)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개소의 신규사업이 신청되며, 산업단지 분포 밀도가 높고 수질이나 폐수와 관련된 사고 경험이 있는 지자체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외 지자체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개수 및 규모에 더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 사업대상	소계	설치완료	2020년 예산안	
				계속사업	신규사업
서울	1	0	0	0	0
부산	4	0	0	0	0
인천	8	0	0	0	0
대구	6	6	6	0	0
대전	2	1	0	1	0
광주	4	0	0	0	0
울산	8	3	0	2	1
세종	3	0	0	0	0
경기	20	0	0	0	0
강원	2	0	0	0	0
경남	10	5	2	3	0
경북	18	15	10	3	2
전남	7	4	1	2	1
전북	13	3	0	0	3
충남	17	2	0	2	0
충북	22	10	1	6	3
합계	145	49	20	19	10

자료: 환경부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단지 조성 시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하고 있으나,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적 근거나 의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자체가 조속히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출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sup>1)</sup>은 개발이 완료된 우수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사업화자금·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최근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재활용분야의 혁신 기술·설비를 발굴하여 이를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112억 3,000만원 대비 172억원(153.2%) 증액된 2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4,830	4,930	11,230	28,430	17,200	153.2
사업화 기반 마련	4,830	4,830	4,830	13,030	8,200	169.8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 기초조사 연구	0	100	100	100	0	0.0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0	0	6,300	15,300	9,000	142.9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업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사업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기업수를 확대(기존 20개사 대상 최대 2억원 지원 → 40개사 대상 최대 3억원 지원)하는 등 사업화 기반 마련 사업에 13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② 2019년 추경예산에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최근 환경현안 중 하나인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7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혁신 기술·설비의 현장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5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20 예산안
사업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기반구축(컨설팅) : 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사 × 최대 30백만원</li> </ul> </li> <li>○ 사업화 개발촉진(시제품 제작 등) : 12,0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개사 × 최대 300백만원 차등 지원, 정부 70%</li> </ul> </li> <li>○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 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설명회 개최 등 3회 × 100백만원</li> </ul> </li> <li>○ 사업화지원시스템 : 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보수 50백만원 × 1식, 기능개선 200백만원</li> </ul> </li> </ul>	13,030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 기초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융합거점단지 타당성조사 연구 100백만원</li> </ul>	100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관리비 : 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선정위원회 2회 × 20백만원, 최종 선정위원회 4회 × 20백만원, 사업관리시 중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회의 8회 × 20백만원</li> </ul> </li> <li>○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 9,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건 × 1,000백만원 × 60%</li> <li>- (산출내역) 건당, 1,000백만원 = 설비제작 500백만원 + 설치비 200백만원 + 간접비(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VAT 등) 300백만원</li> </ul> </li> <li>○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 6,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건 × 1,000백만원 × 60%</li> <li>- 산출내역은 상동</li> </ul> </li> </ul>	15,300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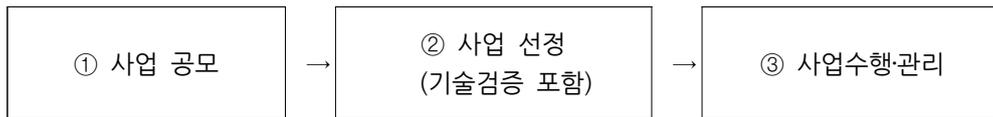
나. 분석의견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및 자원순환·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이 대상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집진 설비 등 스마트 설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과, 폐기물 선별기 등 재활용 설비와 자원화 설비, 악취저감 설비 등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설비를 보유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실용화·사업화<sup>2)</sup>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예산을 교부한 후,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및 자원순환 분야의 실용화 사업을 공모하고, 기술검증을 포함한 두 차례의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이후, 국내 산업현장 등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설비제작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기술 자문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환경부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사업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고, 8월 9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sup>3)</sup>이 마련되었다.

또한, 동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1차 공모(8.13~9.2)를 진행한 결과, 9개 기업(약 43억원 규모)이 신청하여 2개 기업이 선정·지원(9.26, 8.5억원)되었고, 2차 사업공모(9.11~10.11)에서는 25개 기업이 신청(117억원 규모)하여 사업 잔액(51.5억원) 대비 2.3: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2) 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참고로, 환경부는 2019년 4월 22~26일까지 1차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9월 11일 및 16~17일까지 2차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단위: 개소, 천원)

구분	공모기간	신청 기업	선정·지원 기업	지원 규모
1차	'19.8.13.~9.2.	9개소 (약 43억원)	2개소	849,000
2차	'19.9.11.~10.11.	25개소 (약 117억원)	미정	미정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장의 수요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동 사업의 성과 또는 환경설비 투자의 우수사례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지원대상인 중소환경기업뿐만 아니라 설치대상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자원순환분야 환경기업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이수요조사(이메일 활용) 결과, 참여의사를 회신한 업체는 11개사로 회신비율이 4.8%에 그치고 있어 2020년 실제 사업수행 시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19년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2020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자원순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실적과 신청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와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sup>1)</sup>은 물산업 기술개발(R&D)에서 사업화 및 해외진출 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조성이 2019년 6월 완료됨에 따라 물산업클러스터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2억 1,900만원 대비 98억 2,100만원(119.5%) 증액된 18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0	8,219	8,219	18,040	9,821	119.5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시설임대료와 사용료, 각종 검사와 측정에 대한 분석수수료 등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수익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클러스터<sup>2)</sup>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21

2)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12월 시행)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구개발, 기술성능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환경부는 총 2,409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2019년 6월 물산업클러스터를 완공하였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기술개발(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으로 국내 물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위치 :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 내(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 면적 및 사업비 : 부지 145천㎡(4.4만평), 총사업비 2,409억원(국비)
○ 공사기간 : '16.11~'19.6월('19.1~6월 : 시운전 포함), (주태영 등 3개사
○ 주요시설 : 실증플랜트, 실험분석실, 연구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

자료: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진흥시설 중 물융합연구센터의 경우, 물산업클러스터의 자립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산업 관련 기초·응용·융합연구를 수행하고, 물 전 분야를 시험·분석하며 이를 검증·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공인시험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

[물산업클러스터 주요 시설 및 기능]

구 분	주요 시설	주요 기능	위 치
실증화 시설	·실증플랜트 ·수처리설비성능시험동 ·종합관망시험동	- 정수·하수·폐수·재이용 실증시험 - 기업이 직접 TB를 제작·설치·운영 - 상하수도 관망시험	
진 흥 시설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물산업 기초·응용·융합 연구, 시험분석 -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 마케팅·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물산업 제품 개발에 따른 시험·분석 등 성능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물융합연구센터에 총 173종 327대의 시험장비를 도입한 이후, 먹는물 수질검사 등 7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KOLAS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융합연구센터 시험장비 도입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분석항목	분석기기	구축비용
합계	219항목	173종 327대	18,922
먹는물 수질검사	73항목	58종 191대	4,912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3항목	16종 21대	379
수처리제 검사	33항목	1종 1대	1
하·폐수 수질오염도검사	56항목	13종 22대	1,875
위생안전기준 검사	44항목	5종 5대	318
환경측정기 검사	10항목	21종 21대	454
용출·재료시험	-	59종 66대	10,983

주: 타분야와 중복 분석기기는 주요분야 검사장비에 포함  
 자료: 환경부

물융합연구센터는 먹는 물 수질 검사, 위생 안전검사, 수질측정 대행, 국내 물기업의 신기술 인·검증 및 윈스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해외인증 업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검사 및 인·검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으로 인해 2020년에는 8억 5,750만원, 2021년에는 32억원, 2022년 이후에는 57억원 가량의 분석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수입 발생 예상액]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임대 사용료	임대시설	147,092	323,603	597,195	1,059,065	1,470,924	1,470,924
	편의시설	21,233	46,712	86,205	152,876	212,328	212,328
	임대보증금	280,542	336,650	196,379	196,379	392,759	-
시설 사용료	대여시설 (임대율)	58,776 (20%)	129,307 (44%)	170,450 (58%)	211,594 (72%)	293,880 (100%)	293,880 (100%)
	실증플랜트 (가동률)	71,660 (30%)	119,433 (50%)	334,412 (100%)	477,732 (100%)	477,732 (100%)	477,732 (100%)
	분석수수료	<b>147,000</b>	<b>857,500</b>	<b>3,245,200</b>	<b>5,721,000</b>	<b>5,721,000</b>	<b>5,721,000</b>
계	726,303	1,813,206	4,629,843	7,818,646	8,568,623	8,175,864	

주: 목표임대율과 가동율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설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수익 예측 및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물산업클러스터 임대율 제고에 따른 임대료, 실증플랜트 및 실험분석실 사용료와 분석수수료 등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수익은 2022년부터 약 8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따라서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 추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수익분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환경부는 초기 단계인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임대료와 사용료, 수수료 등을 단계별로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2020년에는 50%의 할인율, 2021년에는 30%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 이후에는 클러스터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 가. 현황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sup>1)</sup>은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778억 4,200만원 대비 99억 3,100만원(△12.8%) 감액된 67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36,758	50,889	77,842	67,911	△9,931	△12.8
국가측정망 설치운영	15,993	16,904	30,379	25,393	△4,986	△16.4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	5,140	7,205	10,055	8,511	△1,544	△15.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대책	12,240	19,569	19,870	14,672	△5,198	△26.2
미세먼지 예보 및 국제협력	3,385	6,431	8,115	9,873	1,758	21.7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0	300	5,799	3,568	△2,231	△38.5
간헐정기 상온응축제 운영	0	480	1,350	510	△840	△62.2
미세먼지정보센터운영	0	0	2,276	5,384	3,108	136.6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각종 행정절차 지연 또는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측정망 구축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2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일수 및 고농도일수 증가로 인해 대기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다양한 종류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파악하고 배출원을 규명함으로써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등 효과적인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PM2.5(성분), 대기오염집중측정망 등 8종의 국가측정망과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대기중금속측정망 등 3종의 지자체측정망의 신규 확충과 노후 측정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국가측정망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비 253억 9,300만원과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비 85억 1,100만원 등 국가·지자체측정망 확충을 위해 33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2020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67,911백만원
○ 국가측정망 설치·운영(25,393백만원)
- 수도권 국가측정망 설치·운영 (1,848백만원)
- 수도권외 국가측정망 설치·운영(23,545백만원)
○ 지자체 측정망 설치·운영(8,511백만원)

자료: 환경부

국가측정망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국가측정망의 설치·운영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측정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인 수도권 외 국가측정망 설치·운영의 경우, 2016년 실집행률이 97.4%이었으나 2017년 81.7%, 2018년 7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9월말 현재 3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6~2019년 한국환경공단 민간대행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8,264	8,264	8,264	476	8,740	8,510	0	230	97.4
2017	11,361	11,361	11,361	0	11,361	9,278	1,531	552	81.7
2018	14,899	14,899	14,899	1,531	16,430	12,446	3,170	814	75.8
2019 (9월)	14,404	27,879	27,879	3,170	31,049	10,222	미정	미정	32.9

자료: 환경부

또한, 지자체측정망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적행률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말 기준 실적행률이 47.2%로 확인되어 연내에 지자체측정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2019년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	7,205	10,055	10,055	748	10,803	5,097	47.2
부산	405	788	788		788	404	51.4
대구	173	173	173		173	134	77.5
인천	450	735	735		735	446	60.7
광주	398	488	488		488	248	50.8
대전		90	90		90	0	-
울산	461	461	461		461	142	30.8
세종	20	20	20		20	0	-
경기	1,808	2,483	2,483		2,483	863	34.8
강원	73	163	163	125	288	185	64.3
충북	465	1,140	1,140	36	1,176	291	24.7
충남	98	390	390		390	0	-
전북	488	488	488		488	250	51.3
전남	215.6	305.6	305.6	350	655	420	64.1
경북	1,320	1,320	1,320	237	1,557	918	58.9
경남	735	825	825		825	732	88.7
제주	98	188	188		188	63	33.8

주: 2019년 9월말 기준 실적행률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측정망 설치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국가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가 진행 중이나 완료된 실적은 0건이고, 지자체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 계획 총 83건 중 완료된 실적은 33건이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측정망은 현재 설치가 진행 중으로 완료된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 및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신설		교체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66	19	24	14
지자체	도시대기측정망	50	13	16	11
	도로변대기측정망	2	0	4	2
	중금속	7	5	0	0
	이동차량	3	1	1	1
국가	유해대기	4	0	3	0

주: 2019년 9월말 본예산 기준 실적행률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대기오염측정망 및 측정장비별 평균적인 사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설치지점 선정과 고시에 3~4개월,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계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2개월, 설치공사 및 장비 구매에 3개월 등 측정망 정상가동까지 약 11~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평균 소요기간]

구분	추진시기	추진목표
신설 사업	전년도 12월~당해연도 3월(3~4개월)	설치지점 선정 및 고시 완료
	당해연도 4월~5월(2개월)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행정절차 완료
	당해연도 6월~8월(3개월)	설치공사 및 장비 구매 완료
	당해연도 9월~10월(2개월)	설치보고 및 시운전, 집행 완료
	당해연도 11월(1개월)	정상가동
교체 사업	당해연도 6월~10월(5개월)	장비 구매 및 시운전 등, 집행 완료
	당해연도 11월(1개월)	정상가동

자료: 환경부

하지만 설치지점 선정과정에서 이동측정차량의 측정 지연이 발생하거나, 신설 지점 선정 이후 입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건물주와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지점을 재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및 장비 납품 과정에서도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소송이 제기되거나 장비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동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신규 측정망 설치지점 선정과 각종 행정절차 및 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측정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신청을 할 경우 관할 시·도에서 검토한 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사업요구내용의 적절성을 심사·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선정기준은 인구 및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반영 여부, 내구연한,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구분	추진목표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인구 수</li> <li>▪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현황</li> <li>▪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반영 여부</li> <li>▪ 내구연한</li> <li>▪ 지리적 위치</li> </ul>
선정절차	기초지자체 신청 → 시·도 검토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우선순위 검토(선심) → 환경부 검토

자료: 환경부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 이월액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국립공원공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69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수입 규모의 정확한 계상과 사업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78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81
4	한국환경공단의 수지차보전 예산 체계 변경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87
5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95



고용노동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3조 9,69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141억원(9.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6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억원, 고용보험기금 13조 5,246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조 9,736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432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5,2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222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8,259	86,322	86,322	86,322	0	0.0
- 일반회계	67,941	85,961	85,961	85,961	0	0.0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18	361	361	361	0	0.0
기 금	19,787,821	21,769,379	21,769,379	23,883,477	2,114,098	9.7
- 고용보험기금	10,679,446	12,117,124	12,117,124	13,524,561	1,407,437	11.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7,970,939	8,419,624	8,419,624	8,973,561	553,937	6.6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577,987	617,601	617,601	743,172	125,571	20.3
- 임금채권보장기금	443,349	494,091	494,091	519,991	25,900	5.2
- 근로복지진흥기금	116,100	120,939	120,939	122,192	1,253	1.0
합 계	19,856,080	21,855,701	21,855,701	23,969,799	2,114,098	9.7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0조 6,15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4,550억원(8.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5,63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31억원, 고용보험기금 15조 5,484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조 8,67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967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5,006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453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606,478	6,984,463	7,045,078	6,957,144	△87,934	△1.2
- 일반회계	5,443,072	6,809,978	6,837,255	6,563,164	△274,091	△4.0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0,884	76,865	110,203	90,906	△19,297	△17.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2,522	97,620	97,620	303,074	205,454	210.5
기 금	18,455,503	19,731,840	21,114,965	23,657,920	2,542,955	12.0
- 고용보험기금	11,577,806	12,684,867	14,019,324	15,548,354	1,529,030	10.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5,950,890	5,976,888	5,989,249	6,866,987	877,738	14.7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361,714	478,765	484,141	596,655	112,514	23.2
- 임금채권보장기금	426,779	458,519	470,642	500,585	29,943	6.4
- 근로복지진흥기금	138,314	132,801	151,609	145,339	△6,270	△4.1
합 계	24,061,981	26,716,303	28,160,043	30,615,064	2,455,021	8.7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8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6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억 6,100만원이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7,941	85,961	85,961	85,961	0	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8	361	361	361	0	0.0
합 계	68,259	86,322	86,322	86,322	0	0.0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9,57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조 7,904억원(1.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5,63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31억원이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663,483	6,809,978	6,837,225	6,563,164	△274,061	△4.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884	76,865	110,203	90,906	△19,297	△17.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2,745	97,620	97,620	303,074	205,454	210.4
합 계	5,827,112	6,984,463	7,045,048	6,957,144	△87,904	△1.2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7조 2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액 대비 2조 5,106억원(7.3%)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8조 1,51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6조 3,594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조 2,511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853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552억원이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14,472,420	17,065,909	17,065,909	18,151,265	1,085,356	6.4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10,778,407	15,113,770	15,113,770	16,359,388	1,245,618	8.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250,994	1,075,704	1,075,704	1,251,138	175,434	16.3
임금채권보장기금	813,742	876,900	876,900	885,292	8,392	1.0
근로복지진흥기금	308,183	359,394	359,394	355,183	△4,211	△1.2
합 계	27,623,746	34,491,677	34,491,677	37,002,266	2,510,589	7.3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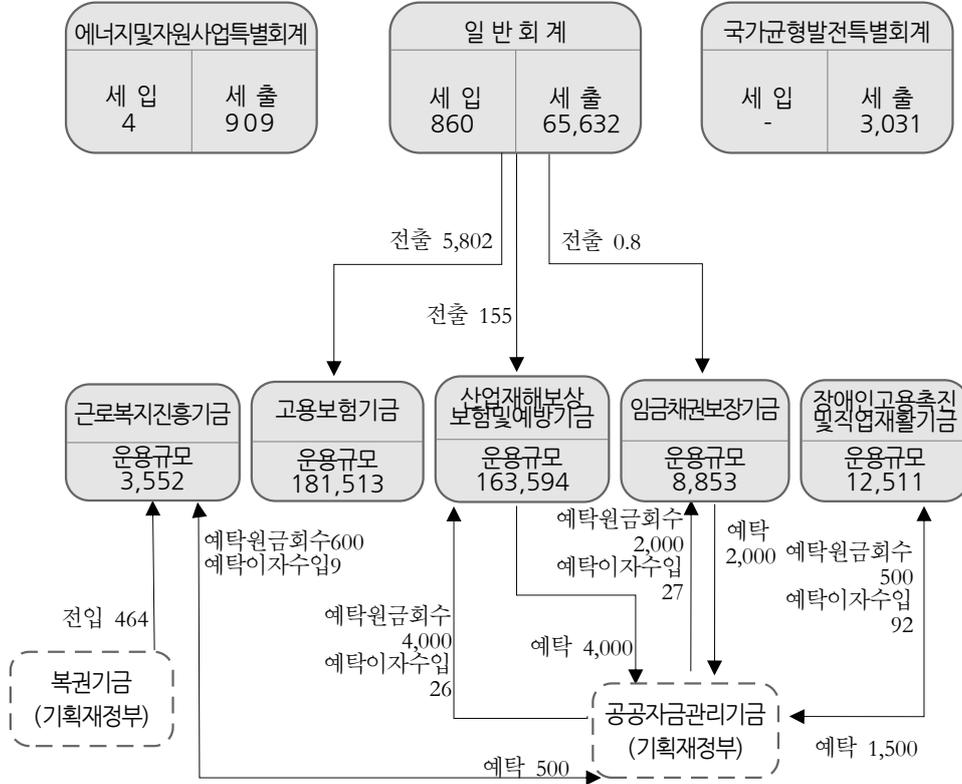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의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5,80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15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0.8억원을 전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000억원을 예탁하고, 4,000억원의 예탁원금 및 26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으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500억원을 예탁하고, 500억원의 예탁원금 및 92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0억원을 예탁하고, 2,000억원의 예탁원금 및 27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으며,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00억원을 예탁하고, 600억원의 예탁원금 및 9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464억원을 전입받는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자리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19년 16조원 → ’20년 19.7조원), ②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20년 2,771억원), ③ 「고용보험법」 개정(19.10.1. 시행)에 따른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지급자수 증가로 인해 구직급여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2019년 7.2조원 → 2020년 9.5조원). ④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하였다(2019년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9,972억원 → 2020년 2년형 14만명, 1조 2,820억원).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관련 법 심사 경과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이 의무지출로 규정되는 경우 지출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시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에 목표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보험기금은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 계정의 실업급여 계정은 고용보험료를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로 법정 적립배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 이관 등 지출 구조조정 및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수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기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5,522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6개)	고용센터인력지원	79,065
	호남권직업체험센터설립 <sup>1)</sup>	8,085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277,128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644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45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25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79,102
	사회적기업육성(제주)	818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3,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개)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3,960
합 계		552,218

주: 1) 호남권직업체험센터설립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0년 잔여사업비 81억원을 재편성함

1.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기존 사업 분리(사회적기업육성(제주) 사업) 등을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구직급여 사업, 체당금 지급 사업 등이 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목표인원을 확대(10만명→14만명)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2019년 하반기 인원(2.5만명)에서 연간 4.5만명으로 지원인원이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증액편성(전년 대비 1,012억원 증액)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④ 구직급여 사업은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 추세 및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단가가 인상되어 증액되었다. ⑤ 체당금 지급 사업은 체당금 지급 상한액 인상,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근로자 대상 체당금 도입 등의 제도 개편 사항이 반영되어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개)	직업안정기관운영	30,881	30,881	40,728	9,847	31.9
	고용노동통계조사	15,948	15,948	22,742	6,794	42.6
	청년내일채움공제	573,975	573,975	778,704	204,729	35.7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75,529	175,529	193,185	17,656	10.1
	취약계층취업촉진	8,700	8,700	12,425	3,725	42.8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5,815	5,815	9,177	3,362	57.8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1,821	25,876	51,342	25,466	98.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00	37,500	67,440	29,940	79.8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2,717	12,717	19,987	7,270	57.2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1,120	1,120	1,820	700	62.5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2,793	2,793	5,273	2,480	88.8
	사회복무요원운용(노동위,총액)	42	42	57	15	35.7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600	600	900	300	50.0
균특회계 (1개)	사회적기업육성(균특)	90,291	90,291	112,291	22,000	24.4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sup>1)</sup>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보험 기금 (6개)	고용창출장려금	872,217	1,063,043	1,168,305	105,262	9.9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349	4,349	6,116	1,767	40.6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23,157	423,157	503,268	80,111	18.9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sup>2)</sup>	84,598	84,598	365,491	280,893	332.0
	구직급여	7,182,783	7,801,263	9,515,779	1,714,516	22.0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276	1,455,276	1,543,248	87,972	6.0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7개)	산재보험급여	5,069,964	5,069,964	5,871,134	801,170	15.8
	산재병원지원	16,004	16,004	22,819	6,815	42.6
	산재보험 시설건립	2,446	2,446	4,144	1,698	69.4
	클린사업장조성지원	76,855	76,855	100,192	23,337	30.4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106,654	106,654	122,758	16,104	15.1
	근로자건강보호	22,743	26,565	38,316	11,751	44.2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88	388	588	200	51.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7개)	장애인고용장려금	210,560	210,560	229,655	19,095	9.1
	장애인고용관리지원	58,727	58,727	98,837	40,110	68.3
	장애인취업지원	16,876	16,876	22,725	5,849	34.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1,349	1,349	2,951	1,602	118.8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7,104	17,104	27,434	10,330	60.4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1,627	64,843	86,289	21,446	33.1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5	145	195	50	34.5
임금채권 보장기금 (1개)	채당금지급	411,423	411,423	444,344	32,921	8.0
근로복지 진흥기금 (2개)	근로복지기금지원	4,223	4,223	17,180	12,957	306.8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 설지원)	22	22	122	100	454.5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은 2020년도부터 3개 세부사업에 나누어져 있던 관련 예산을 통합하였으며, 이관된 내역사업들의 2019년 계획액의 합(3,568억원) 대비 87억원(2.4%) 증액되었음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 가.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균특) 사업<sup>1)</sup>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802억원으로, 하반기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및 구직촉진수당 2,771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예산 31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0	0	0	277,128	277,128	순증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0	0	0	3,114	3,114	순증
합 계	0	0	0	280,242	280,242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고용보험이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발적 이직 및 피보험기간 미충족 등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닌 이직자<sup>2)</sup> 및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 구직자 등은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41-316
-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과 이직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구직급여 수급 신청가능자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으로써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sup>3)</sup>, 2019년 6월 4일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이 의결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I 유형에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II 유형에는 구직활동 참여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 유형은 소득기준, 재산요건, 취업경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하며, 요건심사형은 법적 의무지출로 규정하여 요건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며, 선발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II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50~100% 이하(단,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운영)인 경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요건	취업경험	지원 내용											
						취업지원		소득지원									
I 유형	요건심사형	18~64세	중위소득 50%↓	○	○ (2년 이내) <sup>2)</sup>	- 취업의지, 능력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직업훈련·일경험, 취업 알선,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 구직촉진수당 지급 (50만원×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선발형	18~64세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	필요 없음												
II 유형		18~64세 (고용여건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은 별도로 정함) <sup>1)</sup>	필요 없음	필요 없음	<table border="1"> <tr> <td>능력의지</td> <td>낮음</td> <td>높음</td> </tr> <tr> <td>복지+</td> <td>직업훈련</td> <td>복지지원</td> </tr> <tr> <td>높음</td> <td>직업훈련</td> <td>취업알선</td> </tr> </table>	능력의지	낮음	높음	복지+	직업훈련	복지지원	높음	직업훈련	취업알선	- 구직활동 참여비용 일부지원 - (예시)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최대 20만원), 훈련지원수당 최대 월 28만4천원 등	
능력의지	낮음	높음															
복지+	직업훈련	복지지원															
높음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 1) 청년층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게 별도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임

2) 취업경험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21일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합의 하였으며, 2019년 3월 5일 제도의 기본 골격 및 운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2020년 35만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총 6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취업지원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sup>4)</sup>은 I 유형의 선발형 내 청년특례 유형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sup>5)</sup>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통합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전체 단위사업<sup>6)</sup> 기준 2020년 재정소요액은 5,218억원이며, 2021년부터는 1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소요 예산]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지원 규모				합 계	단위사업 재정소요액 (‘19~’23 중기)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	기타			
2020년	10	9	1	15	35	5,218
2021년	25	10	5	10	50	11,907
2022년	30	10	10	10	60	13,512

주: 재정소요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의 금액(2020년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외함)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안 심사 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 추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이 의무지출로 규정되는 경우 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정지출 규모 등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1234.301

5) 코드: 일반회계 1234.302

6) 2020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1234)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의무지급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2019년 9월 16일 정부안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의 수급 요건,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18~64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 취업경험(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의무출로 규정하고 있다.7)

동 법안의 심사 및 의결 여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 의무화 및 수급 대상자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게 되므로, 추후 예산안 검토시 법안 심사 추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재정소요가 4조 6,5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구직촉진수당	2,494	8,550	10,242	10,688	10,688	42,662
취업성공수당	-	468	885	1,237	1,237	3,827
전산망 구축비	85	-	-	-	-	85
합계	2,579	9,018	11,127	11,925	11,925	46,574

주: 지원인원은 2020년 하반기 20만명, 2022년부터는 50만명으로 산출함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직지원 수급 요건(안 제5조 및 제6조)
- 나. 구직지원 수급자격의 인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안 제26조 및 제27조)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구직촉진수당이 의무지출로 규정되는 경우, 목표인원과 관계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다.

동 사업은 공공부조로, 사회보험과는 재원 부담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수입을 충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 부담의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며, 기금 내 적립금을 적립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조세 등으로부터 세입을 충당하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재원 부담의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외부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비교]

구분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급요건 충족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등)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지원
지원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sup>1)</sup> × 소정급여일수 <sup>2)</sup> (19년 최저 60,120원 최대 66,000원)	50만원 × 6개월 (정액 현금 급여)
지원 조건	매 1~4주마다 재취업활동 사실 신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활동 참여
재원	고용보험기금(법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일반회계

주: 1)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60%로 인상됨

2)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구분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재원 부담이 수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업 시일을 미루거나 취업 의향이 없음에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급자<sup>8)</sup>와 비수급자 간 비교 시, 취업률은 수급자가 78.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유지율은 83.0%로 비수급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소요기간은 104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sup>9)</sup>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비교]

구분	취업자(명)	취업률(%)	3개월 고용유지율(%) <sup>1)</sup>	취업소요기간(일)
수급자	2,383	78.0	83.0 (766/923)	104
비수급자	631	65.7	87.6 (211/241)	75
계	3,014	75.1	83.9	98

주: 1) 3개월 고용유지율은 취업 이후 3개월이 지난 인원 중 고용이 유지되는 인원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고용유지인원과 대상인원으로, 아직 단계별 취업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고용유지율 차이는 대상인원이 축적된 이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2019년 9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하여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여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0)</sup>

- 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서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30~50%)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집행 성과를 반영하여 사업 설계 과정에서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9) 구직촉진수당 수급 인원 중 단계적 취업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프로그램 종료자 및 취업자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취업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취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소요기간의 기산점이 초기상담일로, 소요기간은 초기상담일 이후 1단계 IAP 수립(통상 1개월 소요) 등을 거쳐서 취업이 된 시점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으로 취업이 지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지원으로 충분한 구직기간을 갖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10) 각 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① 일경험프로그램, ② 직업훈련, ③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굴연계하고, 양육·장애·질병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④ 각종 복지·금융·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직업훈련이 다양화되어있음에도 대부분 일반직종(계좌제) 훈련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 지급이 실제 구직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sup>11)</sup>

**셋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집행 현황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목표인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I 유형을 소득조건, 재산조건, 취업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심사형 10만명과 선발형(청년특례 9만명, 기타 1만명)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요건심사형의 경우, ①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② 2년 이내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에서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③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및 구직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①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②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선발형의 기타 유형의 지원 대상이 된다.<sup>12)</sup>

2019년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30~50%의 저소득층 13,687명을 목표로 12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집행률은 목표인원 기준 66.7%, 예산 기준 28.5%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

육아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대상별 취업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모델 구축 추진하는 한편,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형별 취업알선 연계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1)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단계 훈련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14만 7,910명) 중 일반직종(계좌제) 참여인원은 75.4%, 국기훈련 참여인원은 24.0%, 기타 훈련 참여인원은 0.6%인 반면, 저소득층은 일반직종(계좌제) 참여인원이 84.3%, 국기훈련 참여인원이 15.6%로, 상대적으로 일반직종(계좌제) 참여인원 비중이 높다.
- 12)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 중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기존 노동시장 진입자는 의무지출 대상으로 포함하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는 취업의지 없이 수당만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형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지원자 수			지급액		
목표	지원인원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3,687	9,123	66.7	12,318	3,511	28.5

주: 2019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참여자를 살펴보면, ① 중위소득 30~60%인 경우가 7만명, ②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2.5만명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서는 30~50% 참여인원은 7만명 이하로 추정되며,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보다 없는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저소득층) 참여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전체 인원	소득 기준		취업경험 여부	
		30% 이하	30~60%	2년 이내 있음	없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104,253	15,451(14.8)	70,511(67.6)	25,273(24.2)	78,980(75.8)
국민취업 지원	요건심사형	100,000		○(30~50%)	○
	선발형(기타)	10,000		○(30~50%)	○

주: 1.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정계층(신용회복지원자,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이 있으므로 I 유형 전체 참여인원과 소득기준별 인원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 취업경험 여부는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2년 내 고용보험가입 여부로 확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하여 소득지원 수준이 강화되어 참여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감안하여 취업경험요건을 단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뿐 아니라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인정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보다 참여 대상자<sup>13)</sup>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의 18~64세 중 연간 구직경험이 있는 자)의 잠재적 대상자는 54만명, 선발형 기타(중위소득 60% 이하의 18~64세 중 연간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잠재적 대상자는 169만명, 선발형 청년특례(중위소득 60~120% 청년)의 잠재적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지원 수준이 강화되어 저소득층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제도 시행 첫 해이며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저소득층 구직자 11만명(요건심사형 10만명, 선발형 기타 1만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및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사업의 예산에는 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 8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비 구입비용 55억원, 시스템 개발 비용 30억원으로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전 완료되어야 하는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사업 등의 경우 ISP 수립 완료 이전에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요구 가능하며, 9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초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ISP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안에는 상담직 공무원 325명을 증원하기 위한 소요비용이 편성된 상황이다. 공무원의 증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직제 개정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나, 동 증원인원에 대한 직제 개정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해 판단이 어렵고, 재정투입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절차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속히 진행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및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및 실업자의 취업알선·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며, 각 계정은 다시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이하 ‘고안·직능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근로자 계정이 고용보험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근로자 계정의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sup>1)</sup>과 산전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고안·직능계정은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지출계획안 및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계정	2020년도 계획안	계정별 주요 사업		
		사업명	2020년도 계획안	
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95,158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창출장려금	11,683	
		내일배움카드	7,808	
		청년내일채움공제	5,03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155		
자영업자	실업급여	55	자영업자실업급여	5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4		
합계	155,483			

주: 위의 합계가 고용보험기금 전체 지출 계획안인 18조 1,513억원보다 작은 것은 계정별 지출규모 산정 시 여유자금운용 2조 6,029억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뿐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8조 1,513억원으로, 2019년 17조 659억원 대비 1조 854억원(6.4%) 증액되었다.<sup>2)</sup>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구성되는 부담금(12조 9,203억원)이다. 지출의 경우 사업비가 15조 4,462억원으로 가장 많다.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여유자금 회수
	소계	부담금	용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		
	135,246	129,203	796	3,099	2,147	5,802	40,465
지출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154,462		1,022		-	26,02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1.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 관리 필요

### 가. 현황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부담금 9조 7,74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800억원 등을 포함한 10조 1,978억원이며, 지출은 구직급여 9조 5,158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5,432억원을 포함한 11조 4,449억원이다.<sup>3)</sup>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수입		지출	
구분	2020년도 계획안	구분	2020년도 계획안
합계	101,978	합계	114,449
부담금	97,741	구직급여	95,158
일반회계전입금	1,800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

주: 계정별 수입·지출 규모 산정 시 여유자금운용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 2020년 계획안 기준 고용보험기금 전체의 재정수지는 1조 4,436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자영업자 계정은 임금근로자 계정 규모의 0.1% 이하이므로,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사업비 중 83.1%는 구직급여 사업<sup>4)</sup>으로, 동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계획액은 9조 5,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616억원(26.0%)가 증액되었다.

[2020년도 구직급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구직급여	6,454,869	7,182,783	7,554,224	9,515,779	1,961,555	26.0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보험료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1.5~2배이다.<sup>5)</sup>

그러나 2020년 계획안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3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적립배율 하향 추세는 2018년 결산(0.7배), 2019년 계획안(0.5배)부터 이어져왔다. 또한, 2020년 계획안 기준 실업급여 계정은 1조 2,471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2018년 결산부터 시작된 재정수지 적자(2,750억원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4) 코드: 고용보험기금 1280-350

5)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안)	비고
수입	70,340	71,476	76,407	89,347	101,978	적립배율 : 1.5~2.0
지출(a)	58,557	62,858	79,157	93,355	114,449	
재정수지	11,783	8,618	△2,750	△4,008	△12,471	
적립금(b)	49,371	57,958	55,201	51,193	38,722	
<b>적립배율(b/a)</b>	<b>0.8</b>	<b>0.9</b>	<b>0.7</b>	<b>0.5</b>	<b>0.3</b>	

주: 1. 2016~2018년은 결산, 2018년은 8월말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액 기준, 2020년은 정부안 기준  
 2. 2016~2018년은 결산에 따른 운용결손액을 반영하여 적립금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가 수입 규모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2020년 계획액에서는 수입은 전년 대비 1조 2,631억원(14.1%), 지출은 전년 대비 2조 1,094억원(22.5%)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sup>6)</sup>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3%(사업주, 근로자 각각 0.65%)에서 1.6%(사업주, 근로자 각각 0.8%)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금은 2019년 8조 5,710억원에서 9조 7,741억원으로 14.0% 증액 편성되었다.

반면, 지출의 증가는 주요 사업인 구직급여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구직급여의 2020년 증가율(26.0%)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급여 사업 지출 증가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계획액	47,649	51,228	53,351	65,946	75,542	95,158
전년 대비 증가율	18.2	7.5	4.1	23.6	14.6	26.0

주: 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종 수정계획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구직급여일액을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의 50→6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구직급여 소정일수를 90~240일→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2020년 구직급여 사업 계획액이 증액된 사유는 ①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②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으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급자 수(136.8만명)는 지급자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하였으며, 구직급여일액 및 1인당 지급일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상향조정 및 소정일수 연장을 감안하여 각각 전년 대비 1.3%, 15.3%가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구직급여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① 구직급여(순수) = 9,513,403백만원(1,367,631명<sup>1)</sup>×59,454원<sup>2)</sup>×117일<sup>3)</sup>)
- 1) (지급자수) 1,367,631명 = '18년 실제 구직급여 지급자(1,315,030명) 수 × '19.1~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평균(4.0%)
- 2) (구직급여일액) 59,454원 = '18년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실제 기초임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 × 임금상승률 3.11%(13~17 평균)
- \* '20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0,060원~60,120원
- 3) (1인당 지급일수) 117일 = '18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실제 지급일수 97.3일 + 법개정 시 예상되는 실제 지급기간 연장일수 19.2일
- ② 훈련연장급여 110백만원, 개별연장급여 2,266백만원

주: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훈련 받는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연장하여 지급)를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 증가율’을 고려하여 2020년 지급자 수 증가율을 산출하였으나, 지급자 수 증가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소요액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2019년 5월~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0%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1.4% 증가하고 있어 그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또한, 수급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5.2%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수급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17.9월	'18.9월	'19.5월	'19.6월	'19.7월	'19.8월	'19.9월
수급자	371	394	503	486	500	473	444
(증감)	13	23	54	51	54	37	50
<b>(증감률)</b>	<b>(3.7)</b>	<b>(6.3)</b>	<b>(12.1)</b>	<b>(11.8)</b>	<b>(12.2)</b>	<b>(8.5)</b>	<b>(12.6)</b>
수급금액	4,600	5,050	7,587	6,816	7,589	7,256	6,685
(증감)	600	449	1,504	1,172	1,769	1,098	1,635
<b>(증감률)</b>	<b>(15.0)</b>	<b>(9.8)</b>	<b>(24.7)</b>	<b>(20.8)</b>	<b>(30.4)</b>	<b>(17.8)</b>	<b>(32.4)</b>
피보험자	12,879	13,282	13,665	13,687	13,722	13,757	13,791
(증감)	291	403	533	530	544	545	509
<b>(증감률)</b>	<b>(2.3)</b>	<b>(3.1)</b>	<b>(4.1)</b>	<b>(4.0)</b>	<b>(4.1)</b>	<b>(4.1)</b>	<b>(3.8)</b>

주: 1. 증감액 및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이며, '19년 9월 자료는 잠정치임  
 2.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자영업자 제외, 일용근로자 포함된 임금근로자 기준임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제외한 임금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분 '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이와 같은 수급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도 구직급여 지출 소요액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도 계획보다 더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한 「고용보험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2.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수입은 부담금 3조 1,3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000억원 등을 포함한 3조 8,930억원이며, 지출은 고용창출장려금 1조 1,68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033억원 등을 포함한 4조 965억원이다.

2020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을 위한 전입금 4,000억원이 신규로 편입되었다.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0년도 계획안	구 분	2020년도 계획안
합 계	38,930	합 계	40,965
부담금	31,330	고용창출장려금	11,683
일반회계전입금	4,000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033

주: 계정별 수입·지출 규모 산정 시 여유자금운용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사업 이관 등 지출 구조조정 및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을 1.0~1.5배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2020년도 계획안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7)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0.7배로, 2018년 결산(1.1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정수지는 2,035억 원 적자로, 2018년 결산(5,374억원 적자) 및 2019년 계획액(8,93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 계정 재정수지 현황(2015~2019)]

(단위: 억원, 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안)	비고
수입	31,995	29,795	31,193	33,103	38,930	적정 적립배율 : 1.0~1.5
지출(c)	30,064	31,700	36,566	42,033	40,965	
재정수지	1,931	△1,904	△5,374	△8,930	△2,035	
적립금(d)	46,198	44,264	38,886	29,956	27,922	
<b>적립배율(d/c)</b>	<b>1.5</b>	<b>1.4</b>	<b>1.1</b>	<b>0.7</b>	<b>0.7</b>	

주: 1. 2016~2018년은 결산, 2019년은 8월말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액 기준, 2020년은 정부안 기준  
 2. 2016~2018년은 결산에 따른 운용결손액을 반영하여 적립금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자폭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일부 사업의 이관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고용보험기금의 2개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20년 예산안 기준 2,582억원)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사업비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타 회계로의 이관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이관 회계명	2018 결산	2019 계획액		2020 계획액
			당초	수정	
고용센터 인력지원	일반회계	68,111	72,679	72,679	79,06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23,414	108,300	108,300	179,10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계획안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2017년 이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사업비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0년도 예산안은 9,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2억원(11.4%) 증가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0년도 예산안은 5,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억원(18.9%) 증가하였다. 동 사업들은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 2~3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결산	2019 수정(A)	2020 계획안(B)	중기재정계획		
				2021	2022	20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30,754	889,749	990,900	1,180,759	927,100	494,920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204,385	423,157	503,268	547,663	573,020	466,823

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지원분은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정 적립배율을 하회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실업자 및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 가. 현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sup>1)</sup>은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I 유형(저소득층)과 II 유형의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경우 35~69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0억 7,800만원이 감액된 2,446억 7,300만원이다.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sup>2)</sup>은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56억 4,000만원이다.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대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전직서비스 및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2020년도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501,736	370,960	390,751	244,673	△146,078	△37.4
중장년층취업지원	24,152	22,911	22,911	25,640	2,729	11.9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2

2) 코드: 일반회계 1340-300

## 나. 분석의견

첫째,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2020년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중장년층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은 I 유형(저소득층)과 II 유형의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중장년층은 2020년 3만명 지원을 목표로, 전년(24,000명) 대비 목표 인원을 25% 증가시켰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28,061명 이후 2018년 16,98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 이후 목표인원도 축소해오고 있으나, 2019년 추경 예산에서는 당초 2만명에서 2만 4천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도 목표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7월 기준 참여인원이 9,529명에 그치는 등 여전히 참여인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목표인원 3만명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층 목표인원 및 참여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7.	2020(안)
목표인원(A)	45,000	35,000	30,000	24,000	30,000
참여인원(B)	28,061	23,555	16,989	9,529	-
지원율(B/A)	62.4	67.3	56.6	39.7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40대, 50대 고용사정 악화, 고용위기지역 연장 등에 따라 중장년층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여 목표인원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자체모집 허용, 고용위기·조선업 밀집지역 집중 홍보 및 참여자 발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없이 목표인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하여 중장년층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장년층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률은 2016년 66.0%에서 2018년 57.2%까지 감소하였으며, 6개월 고용유지율도 61.0%에서 55.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단위: %)

구분	취업률	고용유지율			
		3월	6월	1년	
2016	계	66.2	77.0	62.0	45.9
	저소득층	59.0	76.9	62.2	43.9
	청년층	71.6	77.2	62.1	47.1
	<b>중장년층</b>	<b>66.0</b>	<b>75.6</b>	<b>61.0</b>	<b>44.9</b>
2017	계	64.1	76.3	62.3	48.3
	저소득층	55.9	76.3	62.3	47.0
	청년층	69.7	76.8	62.8	49.6
	<b>중장년층</b>	<b>62.2</b>	<b>71.6</b>	<b>57.2</b>	<b>40.9</b>
2018	계	61.9	77.0	62.3	49.9
	저소득층	52.0	76.5	62.2	50.0
	청년층	67.3	77.6	62.8	50.3
	<b>중장년층</b>	<b>57.2</b>	<b>72.1</b>	<b>55.4</b>	<b>42.4</b>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서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설계서비스 지원인원을 증가('19년 25,000명→20년 40,000명)시켰으며, 개소당 인력을 2명씩 증원시켰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전체 고용서비스 사업과 비교하여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취업률은 18.5%, 알선취업률은 2.3%로, 전체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률 38.9%, 알선취업률 23.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주된 알선 업종이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없어 취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

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재직자에 대한 생애경력설계를 포함하여 취업률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일)

구분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 기간	임금수준	알선 취업률
		6개월	12개월			
취업지원 전체	38.9	54.5	38.2	95.2	94.0	23.3
중장년층취업지원	18.5	58.3	37.4	132.2	107.8	2.3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23.8	59.5	38.1	137.9	113.6	2.3
고령자인재은행	8.5	52.0	31.6	96.9	72.2	2.3

주: 1. 고용유지율은 6개월 이내 취업자 중 6개월 또는 12개월 고용유지자의 비율  
 2. 임금수준은 '고용보험 취득 시 월평균임금 /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력 1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3. 알선취업은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알선취업이 확인된 경우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중장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시 고용서비스 사업의 목표를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취업률, 알선취업률 등의 지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 자체모집 허용, 취업성공패키지 내 중장년층 특화 시범센터 운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유관사업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목표인원 증가 외에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sup>1)</sup>은 신중년(50~60대)의 은퇴 후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4억 6,600만원(98.4%)이 증액된 51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8,461	21,821	25,876	51,342	25,466	98.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8,031	8,992	30,677	21,685	241.2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부터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비영리기관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아동 학습지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며, 국고보조율은 약 50%이다. 지자체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 신청 후 예산이 배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업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6-301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대상인 신중년(50~60대)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과 대상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당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업 경영 컨설팅, 지역 특화사업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2019년에는 2,50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 당 10,400원 단가를 적용하여 1주에 15시간씩 44주(약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집행결과 평균 주 26.7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0년에는 근로시간을 주 25시간으로 하고<sup>1)</sup> 인원을 전년 대비 2배인 5,000명으로 확대하였다.

[2019~2020년도 예산 및 집행 실적]

구분	2019 본예산	2019 집행	2019 추경예산	2020 예산안
인원	2,500명	2,064명	+500명	5,000명
단가(시간당)	10,400원	10,400원	10,400원	10,699원
주 근로시간	15시간	26.7시간	15시간	25시간
기간	44주(10개월)	7개월	4개월	44주(10개월)

주: 2019년 집행은 2019년 10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목적 및 참여대상이 유사한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은 은퇴세대 또는 노년층의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유사한 시설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에 속하고 참여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sup>2)</sup>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은 신중년(50~60대)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65세

1) 주 근로시간이 계획 대비 길게 나타남에 따라 인원을 당초 2,500명 목표에서 2,064명으로 축소하여 운영 중이다.

2)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소득보조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일자리 등)이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로자로 사업을 설계하였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배치 시설(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당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대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과 이들의 시장형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차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집행 현황을 보면 일부 인원이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참여연령도 60대 이상이 44.8%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와 대상자 및 근무유형(시설) 등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주요 내용 비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소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신중년(50~60대)	60세 이상 (2019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목적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근무 성격	근로	근로
근무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근무 시설	관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시설(농촌기술센터 등), 취약계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다함께돌봄시설, 어린이집 등
대상 인원 (편성 기준)	2019년 2,500명 2020년 5,000명	2019년 20,000명 2020년 37,000명
근무 기간	월 100시간, 10개월 (2019년은 월 60시간)	월 60시간, 10개월
시간당 단가	10,699원 (2019년 10,400원)	9,000원
월 급여	94.5만원	59.4만원

주: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2019년과 2020년이 달라진 부분은 괄호 안에 2019년 내용을 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54세가 29.3%, 55~59세가 25.9%, 60~64세가 30.7%, 60~69세가 9.8%, 70세 이상이 4.3%로, 60세 이상이 44.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두 사업 간 참여대상의 중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참여자	1,849	541	479	566	183	81
(비율)	(100.0)	(29.3)	(25.9)	(30.7)	(9.8)	(4.3)

주: 2019년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간 중복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장형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sup>1)</sup>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및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등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375억원 대비 299억 4,000만원(79.8%) 증액된 67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0	37,500	37,500	67,440	29,940	79.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sup>2)</sup>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7월 「저출산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이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9-301

2)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전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만원(월 50만원×3개월분)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sup>3)</sup>

고용노동부는 2019년 하반기 시행에 따라 6개월분이 반영되었던 지원 인원(25,000명)을 확대하여 연간 44,893명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2020년도 예산안 증액 세부내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67,340백만원(※ 1억원은 기타 사업운영비로 편성)
- 지원인원	: (‘19) 하반기 2.5만명 → (‘20) 연간 44,893명
- 지원금액	: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지원
- 지원인원 산출근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18) 결과를 감안하여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출산급여 지원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및 향후 사업 신청률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유형으로, ①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미충족하는 자, ②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근로자,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어업 또는 총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사업 근로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사업 근로자, ③ 1인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요건 확인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와 함께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출산일부터 90일 휴무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며, 최초 지급 시점이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전 회차분까지 모두 지급된다.

4)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범위]

구분		세부내용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단기일자리 등)
	고용보험적용제외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등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됨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18) 결과와 분만자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48,790명의 연간 지원대상을 추계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 기간에 따라 25,000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추계]

2019년 분만여성 추계 312,757명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미가입자	가입자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초단시간, 농림어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 퇴사자 <sup>1)</sup>	180일 자격 미충족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			
우선지원 36,774명		우선지원 (지원가입조치) 10,657명		우선지원 1,359명	
<b>2019년 추계 48,790명(연간 인원)</b>					

주: 1)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전·후 퇴사자는 4.5만명(이 중 퇴사 후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2.13만명으로 추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

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전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기준 동 사업을 통해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인원은 총 779명이며, 지급된 총 급여액은 5억 4,600만원으로, 당초 목표 인원을 기준으로 3.1%,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1.5%만이 지급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 현황('19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사업명	예산		집행('19.8.)			
	예산액	목표인원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지원률
고보미적용자 출산급여	37,500	25,000	546	1.5	779	3.1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시행 후 2~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실적이므로 추후 연도 말까지 출산급여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이 6개월이라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총 지원인원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목표 인원으로 연간 44,893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추계인원인 48,790명 대비 8.0% 감소한 인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하락한 이후 2018년에는 0.97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출산율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한 출산급여 지원 대상인원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9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가임여성 1인당 출산자녀수,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sup>2)</sup>
합계출산율 <sup>1)</sup>	1.172	1.052	0.977	미정
출생아수	406,243	357,771	326,822	183,787

주: 1) 합계출산율은 출산가능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2) 2019년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출생아수를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재정리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출산급여 지원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사업 효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및 향후 사업 신청률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일자리위원회운영 사업<sup>1)</sup>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6억 6,100만원이다.

[2020년도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자리위원회운영	4,387	4,975	4,975	5,661	686	13.8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5.16. 시행)」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민간 부위원장 1명,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또한, 일자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일자리기획단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며 정책개발부 및 운영지원부 등 현원 4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7045-301

2) 당연직 위원은 정부부처의 장(11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3명), 일자리수석비서관이며, 위촉직 위원은 근로자대표(3명), 사용자대표(3명),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명)이다.

## 나. 분석의견

일자리 정책의 심의·조정이라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역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연계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인원 증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 모델개발 지원 정책연구비 등을 편성하였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신설 관련 예산 편성 상세내역]

[일자리위원회운영 '19년 4,975백만원 → '20년 5,661백만원(686백만원 증액)]
① (인건비) '19년 720백만원 → '20년 947백만원(227백만원 증액)
- 상용임금: 1명 증원('19년 5명→ '20년 6명)
② (운영비) '19년 3,094백만원 → '20년 2,934백만원(160백만원 감액)
-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고 1억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1억원, 홍보동영상 제작 6백만원
③ (국내여비) '19년 85백만원→ '20년 91백만원(상생형지역일자리 출장소요 6백만원 증액)
④ (연구용역비) '19년 550백만원 → '20년 1,227만원(677백만원 증액)
- 일반연구비: '19년 150백만원→ '20년 264백만원
(상생형지역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발 102백만원)
- 정책연구비: '19년 400백만원→ '20년 963백만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개발 161백만원×3개권역 지원 및 정책연구 40백만원×2과제)

자료: 고용노동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 노·사·시민 사회·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②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와 복지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1개 팀, 10명)<sup>3)</sup>를 신설하였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① 상생형일자리 프로젝트 관리 및 회의체 운영 등 지원, ② 투자애로사항 해결 등 정책 조정, ③ 모델 발굴 및 연구, ④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종합 정보제공 등 홍보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3) 관계부처 6명(산업부 3명, 기재부·고용부·행안부 각 1명), 유관기관 3명(한국산업단지공단·노사발전재단 등), 지자체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주요 기능]

구 분	주요업무
지원 총괄	① 상생형일자리 프로젝트 관리 ② 상생형일자리 회의체(자문단 등) 운영 및 지원방안 수립 ③ 관련 법제도 대응 및 사업예산 관리 ④ 상생형일자리 정책연구·실태조사·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 조정	① 프로젝트별 투자애로 해결지원 ② 정부지원 인센티브, 건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협의 ③ 예산사업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④ 광주형일자리 등 프로젝트별 전담TF 운영
모델 개발	①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 및 지자체·기업 현장밀착 컨설팅 지원 ② 관련 지자체, 기업 등 수요 발굴 및 분석, 참여주체 발굴 ③ 지역별 설명회 개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④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지원
모델 홍보	① 상생형일자리 모델·제도 홍보계획 수립 ② 상생형일자리 온라인플랫폼 등 종합정보전달체계 운영 ③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매뉴얼 제작·배포 ④ 포럼 운영 및 신문·방송 광고 등 홍보 추진

자료: 일자리위원회

그러나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고용노동부와 조정 및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4)</sup> 이를 고려할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시 정책 조정 및 연계 등

4)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에 중점을 두어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sup>5)</sup>을 통해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과의 연계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모델 발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서는 2017년부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4개소, 2018년 8개소에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8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16억원이 편성되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주로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반면, 일자리위원회의 정책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추진 현황, 투자 장애요인 등 추진상 애로사항 파악, 해결방안 모색 등에 거시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 정책연구와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 비교]

구 분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세부사업 (내역)	일자리위원회운영 사업 (모델확산 정책연구)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예산안	2020년(안) 4.83억원	2020년(안) 16억원
사업주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대상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 연구	특정 지자체 선정 후 개별 모델 구축 지원
추진실적	-	'17년 4개 지역(3억원) '18년 8개 지역(8억원) '19년 9개 지역(16억원)

자료: 일자리위원회

두 사업의 목적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수행 시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8-350

## 가. 현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sup>1)</sup>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차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 고용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8억원이 증액된 1,791억 2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663억 7,000만원)의 신설이다.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23,414	108,300	108,300	179,102	70,802	65.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0	0	0	66,370	66,37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지역일자리사업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지방과의 협업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한 사전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고용위기 우려와 관련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가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고용노동부가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1056-317

이 사업에 선발되는 지역에는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간 또는 광역-기초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20~40%, 기초자치단체는 10~3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기존 공모사업 비교]

구 분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지원 대상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지원 기간	단년도 위주	2~5년간(중장기)
심사 대상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계획	중장기 지역 일자리 종합계획
중앙정부 역할	재정지원	재정 및 컨설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5개소에 13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치단체 지원비용 6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컨설팅 비용 2억원, 모니터링 및 평가 비용 10억원, 담당자 교육비용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세내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66,370백만원(순증)]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 65,000백만원 (5개소 × 13,000백만원)
② 자치단체 컨설팅·평가 및 역량강화 등 : 1,370백만원
■ 자치단체컨설팅 : 200백만원 (5개소 컨설팅 × 40백만원)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1,000백만원
■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17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지원 대상 기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내용 및 심사·평가기준 등 사업모델 개발 연구는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진행 중으로,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 지원금액 배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2)에 따라 제1호에서 제3호의 정량조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4호의 정량조건 또는 제5호의 정성조건을 갖춘 경우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7월말 기준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정량조건인 고시 제4조제1호에서 제4호를 각각 만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36개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해당되는 자치단체 수가 늘어나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정량조건 충족 자치단체 수]

유형	요건	지역 수
TypeA (제1호-제3호)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12개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2개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7개
TypeB (제4호)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9개
합계(중복 제외)		36개

주: 1. 2019년 7월말 기준  
 2. 중복 및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해당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통한 지원 기준 마련 시 지역의 고용 위기 정도에 따라 재정배분의 형평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금액 배분 기준 등을 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내일배움카드 사업<sup>1)</sup>은 실업자 및 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체계를 2020년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① 일반회계의 실업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및 미가입 재직자), ② 고용보험기금의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③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가입 재직자 및 자영업자) 등 3개 사업으로 직업훈련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① 내일배움카드(일반), ② 내일배움카드(고보) 2개 사업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979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7,808억원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안(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계획안)(B)	증감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A)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72,301	88,946	88,946	97,904	8,958	10.1
내일배움카드(고보)	799,083	692,946	806,984	780,816	△26,168	△3.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는 고보 가입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던 훈련 과정을 훈련 과정별로 이관하여 정리하였다. 기존에는 고보 가입 여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직업훈련 내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5-300, 고용보험기금 1063-352

에서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통합 이후 일반회계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직업훈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고용보험기금에는 실업자 및 재직자의 일반직종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sup>2)</sup>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 사업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간 사업 이관 내역]

대상		2019년			2020년	
		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고보기금)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고보기금)	내일배움 카드 (일반회계)	내일배움 카드 (고보기금)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300명		2,100명	
일반고 특화훈련	미가입자	5,000명			8,500명	
	고보가입자		5,500명			
일반 직종	고보가입실업자		14.6만명			17.7만명
	미가입실업자	2.1만명				
	고보가입재직자 · 자영업자			52.5만명		20.8만명
	미가입재직자	4만명			0.7만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6.6만명			7.9만명

주: 재직자 인원 산출방식은 연인원(반복훈련 참여 인원 포함)에서 순인원(반복훈련 참여인원 제외)으로 변경하여 인원이 크게 감소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통합된 이후에는 유효기간 5년의 하나의 카드로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으로 인해, 입·이직이 빈번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도 재발급 없이 직업훈련을 할 수 있고, 개인의 훈련이력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부담률의 경우, 현재 실업자는 평균 25%, 재직자는 0~20% 수준이나, 2020년부터는 기준을 통합하여 평균 30~4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기계, 동력, 자동차, 전자 등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 지원하여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으로, 그 외 직종은 일반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개편에 따른 변화]

구분	현행	통합·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실업자 ▶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형태 무관(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 기간	▶ 실업자 1년 ▶ 재직자 3년	▶ 5년
지원 내용	▶ 200~300만원 ▶ 실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11.6만원)	▶ 300~500만원(5년, 소득수준 등 고려 차등) ▶ 실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11.6만원)
자부담	▶ 실업자 훈련과정: 평균 25% ▶ 재직자 훈련과정: 0~20%(일부 40%)	▶ 평균적으로 훈련과정 30~40% 수준(소득수준·공급과잉직종 등 고려 차등)
국기 훈련	▶ 인증 훈련기관에서 통합심사를 거친 훈련과정 운영	▶ 신기술분야 등 국가·산업차원에서 필요한 훈련 확대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훈련 수요 변동 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직종별 취업률 및 지원 대상에 따라 훈련비 지원 및 장려금 지급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반직종의 경우, 직종별 취업률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 등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20~100%로 상이하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원을 하되, 대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률을 두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이미지·식음료·제과제빵 등 일부 직종은 40%의 자부담률을, 외국어 과정은 50%의 자부담률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훈련의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장려금의 경우, 실업자는 월 최대 5만원~11.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직자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훈련별 훈련비 지원률 및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구분	훈련비 지원율		장려금
일반직종(실업자)	훈련직종 취업률별 차등지원	일반실업자 20~95%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출석일수 ×2,500원(월 최대 5만원)
		취성패 2유형 30~95%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출석일수 ×5,800원(월 최대 11.6만원)
		취성패 1유형 90~100%	
일반직종(근로자)	원칙 100%, 대기업근로자 80%, 이미용·식음료서비스·제과제빵 등 60%, 외국어 과정 50%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 해 일 18,000원 지급
국가기간전략산업 (실업자)	전액 지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출석일 수×2,500원(월 최대 5만원)
일반고 특화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출석일 수×5,800원(월 최대 11.6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통합 과정에서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자부담률이 차이가 있으나 제도 통합 이후에는 실업자 자부담과 재직자 자부담을 동일하게 가는 방향으로 실업자 평균 25%, 재직자 평균 0~20%인 자부담률을 내일배움카드 통합 이후 30~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려금의 경우에도 실업자·재직자 등 고용형태가 아닌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월 초 기준 동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부담비율 및 훈련장려금 조정은 직업훈련 참여 인원 등 직업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훈련비 및 장려금 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일반직종 훈련 내역을 보면, 전체 실업자 중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훈련 인원은 2016년 46.0%에서 2018년 5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자부담 비율은 20.9~23.9%로,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부담 훈련인원이 절반 이상인 상황 하에서 자부담비율이 현재보다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원이 많을 수 있으며 나아가 훈련 수요 또한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직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직종 및 대기업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 지원이 원칙이어서 2016년 65.2%에서 2018년 15.8%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인원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이를 고려할 때 내일배움카드 통합 이후 자부담비율이 상승하여 실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부담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직업훈련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3년간 일반직종 자부담 비율 및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명, %, 천원)

구 분	일반직종(일반 실업자)			일반직종(재직자)			
	일반회계	고보기금	소 계	재직자	자영업자	소 계	
'16	전체	36,114	177,293	213,407	280,612	1,660	282,272
	자부담 훈련인원	13,767 (38.1)	84,290 (47.5)	98,057 (46.0)	183,629 (65.4)	377 (22.7)	184,006 (65.2)
	1인당 평균 자부담비	23.1%	23.9%	-	113	251	-
	1인당 평균 장려금	234	186	-	-	632	-
'17	전체	37,566	181,628	219,194	272,335	1,615	273,950
	자부담 훈련인원	16,090 (42.8)	97,411 (53.6)	113,501 (51.8)	62,285 (22.9)	267 (16.5)	62,552 (22.8)
	1인당 평균 자부담비	23.1%	23.6%	-	166	281	-
	1인당 평균 장려금	241	200	-	-	580	-
'18	전체	37,264	174,132	211,396	353,180	2,223	355,403
	자부담 훈련인원	17,201 (46.2)	103,452 (59.4)	120,653 (57.1)	55,691 (15.8)	328 (14.8)	56,019 (15.8)
	1인당 평균 자부담비	20.9%	21.3%	-	192	327	-
	1인당 평균 장려금	248	210	-	-	484	-

주: 1. 괄호 안은 전체 인원 중 자부담 훈련인원 비중임

2. 실업자의 경우, 직종별 훈련비 차이가 커서 구체적 비용이 아닌 자부담 비율로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자부담비율 및 훈련장려금의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자부담 비율 및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훈련 수요 및 단가를 산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경우,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前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前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2019년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으로는 103,111명 지원을 목표로, 18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sup>3)</sup> 그러나 2019년 8월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의 훈련 현황을 보면, 집행액은 7,800만원으로 0.4%이며, 참여인원은 2,515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2.4%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훈련 집행 현황('19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사업명	예산			집행('19.8.)		
	예산액	목표인원		집행액	참여인원	수료인원
		연인원	순훈련인원			
고보미가입자훈련	18,560	103,111	40,613	78	2,515	59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는 목표인원을 7,387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존에는 연인원(훈련 중복 참여 인원 포함) 산출 방식에서 순훈련 인원(훈련 중복 참여 인원 제외)으로 변경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3) 당초 정부안 편성 시에는 13만 6,444명(비정규직 및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훈련참여율 2.7%를 곱하여 산출)을 대상으로, 2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억원을 삭감하였다.

4) 훈련인원을 순훈련 인원으로 수정한 이후 훈련단가는 2019년 기준 18만원에서 2020년 기준 45만 7천원으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8월까지의 참여인원을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은 추이가 이어진다면 2020년 예산안 편성 기준인 7,387명을 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직업훈련기관에 훈련희망과정을 신청한 후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고용센터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미가입 근로자의 정보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전 3년간의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sup>5)</sup> 이에 따라 2019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사업주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훈련 참여율이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sup>

이를 고려할 때, 내일배움카드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전히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훈련인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여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훈련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8.11.

## 가. 현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sup>1)</sup>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 또는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95억 6,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거나 ② 정년자체를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일 이전 1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한다.

[2020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년고용안정지원금	115,979	33,638	120,238	96,623	△23,615	△19.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	0	0	29,560	29,56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의 효과성 및 기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은 정년이 도래한 장년층 퇴직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7-350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sup>2)</sup>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제19조<sup>3)</sup>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뒤 2017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하였다.

2018년 6월 기준 기업규모별 정년제 도입률 및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를 살펴 보면, 정년제 도입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22.7%, 1,000인 이상 기업이 94.6%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년제 도입 사업장 중 재고용제도 운영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28.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특정연령 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중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별 정년제 도입 및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단위: 개, %)

기업규모별	도입여부			재고용제도		
	정년제 도입	정년제 미도입	도입률	운영	미운영	운영률
300인 미만	343,442	1,172,086	22.7	98,535	244,905	28.7
300~999인	2,005	208	90.6	878	1,126	43.8
1000인 이상	438	25	94.6	178	261	40.5
소계	345,885	1,172,319	22.8	99,591	246,292	28.8

주: 2018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다른 규모기준을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40억원~1,500억원의 기준을 갖춰야 하며,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은 300인 이하(업종별 300~100인으로 기준을 두고 있음)인 경우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 세부사업에서는 2016년까지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을 지원하였다.<sup>4)</sup> 정년연장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사업은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유사 사업과의 비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기존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규 사업)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정년 폐지 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	▶ 정년(55세 이상)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	▶ 정년 폐지 또는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도래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정년도래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정년도래일 이전 1년 이상 근로한 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sup>5)</sup>

**둘째,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업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지원개월 수 등 산출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고용제도를 미운영하는 300인 미만 사

4) 2016년까지 신규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종전 수급권자의 지원분만 편성되어 있다.

5)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업장(전체 사업장의 71%) 중 15%(전체 사업장의 10.7%)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9개월을 지원 개월수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산출 근거]

$$29,560\text{백만원} = 10,948\text{명} * 30\text{만원(지원단가)} * 9\text{월}$$

$$* 10,948\text{명} = 61.2\text{만명(정년 60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수)} * 71\%(재고용제도 미운영비율) * 15\%(계속고용제도 도입률) * 1.68\%(59세 피보험자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정년연장지원금은 1인당 평균 지원개월 수가 약 8개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약 6.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 시행 첫 해인 2020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평균 지원 개월수가 9개월보다 짧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개월)

연도	정년연장					정년퇴직자재고용				
	예산액	집행액	목표 인원	지원 인원	평균 개월수	예산액	집행액	목표 인원	지원 인원	평균 개월수
'14	32,399	15,710	18,000	7,266	7.2	4,400	6,156	2,300	3,037	6.8
'15	32,399	20,241	18,000	8,096	8.3	5,159	7,474	2,866	3,806	6.5
'16	18,900	15,578	10,500	6,569	7.9	5,877	7,571	3,265	3,952	6.4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설계를 면밀히 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sup>1)</sup>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sup>2)</sup>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추가 고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9,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2억원(11.4%) 증액되었다.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창출장려금	476,429	872,217	1,088,458	1,168,305	79,847	7.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30,754	673,508	889,749	990,900	101,151	11.4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 규모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약정 기간 종료 시 적립금액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조 2,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8억원(28.6%) 증가하였다.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일반회계	215,828	573,975	573,975	778,704	204,729	35.7
고용보험기금	204,385	423,157	423,157	503,268	80,111	18.9
합 계	420,213	997,132	997,132	1,281,972	284,840	28.6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

2) 코드: 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

## 나. 분석의견

동 사업들은 제도 개편 이후 대상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부터 기준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하여 ‘중소기업’ 및 ‘저임금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한도를 축소(90명 → 30명)하였으며, ②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하도록 개선<sup>3)</sup>하였으며, ③ 기존에는 첫 달 임금 지급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확인한 후 신청하도록 개편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부터 3년형 폐지, 임금상한 기준, 기업매출액 규모 설정 등 제도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①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2018년 추경부터 2021년까지 한시지원을 위해 신설했던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였으며, ② 조기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편하였으며, ③ 가입 근로자의 임금상한 기준을 하향조정(월 500만원 → 350만원)하고,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매출액 3,000억원 미만)하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④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6개월로 연장하였다.

두 사업 모두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 대비 지원인원 목표를 유지 또는 확대 편성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을 편성하여 전년(11만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만명을 편성하여 전년(10만명) 대비 확대하였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내용

고용	[현행]				⇔	[개선]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액, 목표인원 추이]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B)	목표인원			지원 인원(D)
		본예산	추경 증액분	합계 (A)		본예산	추경 증액분	합계 (C)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017	0	48	48	17	0	900	900	290
	2018	1,930	1,487	3,417	3,320	45,000	45,000	90,000	128,275
	2019.7.	6,745	2,162	8,897	6,153	98,000	12,000	110,000	-
	2020(안)	9,909	-	-	-	90,000	-	90,000	-
청년내일 채움공제	2017	1,562	408	1,946	1,077	50,000	5,000	55,000	40,170
	2018	3,554	704	4,252 <sup>1)</sup>	4,202	50,000	60,000	110,000	106,402
	2019.7.	9,971	-	9,971	5,586	100,000	-	100,000	-
	2020(안)	12,820	-	-	-	140,000	-	140,000	-

주: 1) 연도내 기금 자체변경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상담창구 개설 비용(6억 1,500만원) 감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두 사업은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준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상이 축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연내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게 되면서, 3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창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감소하여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창출인원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지원인원 중 51.9%가 30인 이상 기업인 상황이나, 제도 개편에 따르면 30~99인 기업의 첫 번째 채용인원 4,417명, 100인 이상 기업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채용인원 3,632명, 총 8,049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의 신규채용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집행액	집행인원(A)		참여기업 수(B)		기업당 평균 지원 인원(B/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30인 미만	163,829	61,727	48.1	23,338	78.9	2.6
30~99인	78,559	30,305	23.6	4,417	14.9	7.1
100인 이상	88,366	36,243	28.3	1,816	6.1	19.9
합계	330,754	128,275	100.0	29,571	100.0	4.3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추경부터 도입되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3년형을 다시 없애고, 2년형의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도입 이후 목표인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2017년에는 가입경로 제한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18년에는 목표 인원의 96.7%가 가입하였으며, 2019년에도 8월말 기준 집행현황을 봤을 때, 연내 목표인원의 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부터는 임금 제한 및 매출액 제한 등 지원요건이 강화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sup>4)</sup> 2017년 이후 지원물량이 많아지고 있어 14만명분의 가입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집행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8.		
			2년형	3년형	합계	2년형	3년형	합계
목표인원 (A)	10,000	55,000	90,000	20,000	110,000	60,000	40,000	100,000
가입인원 (B)	5,217	40,170	87,512	18,890	106,402	57,646	39,661	97,307
집행률 (B/A)	52.2	73.0	97.2	94.5	96.7	96.1	99.2	97.3

주: 2019년 8월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2018년 전체 공제 가입자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 근로자는 2%(2,156명/106,402명)이며, 월 급여 350만원 이상 근로자는 0.6%(632명/106,402명)이다.

### 가. 현황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지원 사업<sup>1)</sup>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확대 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시 설치비용 지원, 노동시간 단축 시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25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8,300만원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동시간 단축 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46억 3,600만원)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105,380	158,421	158,421	151,192	△7,229	△4.6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16,555	17,671	17,671	25,054	7,383	41.8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0	0	0	4,636	4,636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공모·선정하여 노무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한 300인 미만 기업 50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 후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여 단축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의 내역사업

[2020년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500개소① × 75%② × 10.3명③ × 6월 × 20만원

- ①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500개소 선정
- ② 선정기업 중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완료해 장려금을 받는 기업  
(분기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약 3개월 후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 지급 → 4분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지원금 지급)
- ③ 1개 기업당 평균 근로자수 50명 가정 ×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초과 근로자 비율 20.6%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지원 기업과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및 기존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모를 통해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함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법적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특례 제외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의무화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규모	'18.3.20. (공포)	'18.7.	'19.7.	'20.1.	'21.1.	'21.7.	'22.1.
300인 이상		(18.7.1)	특례제외 (19.7.1)				
50~299인(특례제외업종 포함)				(20.1.1)			
5~49인(특례제외업종 포함)						(21.7.1)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300인 미만 기업 중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만을 선정하여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모범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이행한 기업에 대해 간접노무비 등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방식이 적절하며, 지원대상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다수의 장려금 사업이 지급 조건 충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방식인 것과 달리, 공모를 통해 일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제도 설계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도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려금 지급,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창출장려금 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 및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을 지원하고 있으며,<sup>2)</sup>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사업 내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혁신을 실천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sup>3)</sup>

고용노동부는 빈번한 입·이직 발생, 구인난 등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이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근무혁신인센티브제의 경우, 감독 면제, 조세 우대, 금리 우대 등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지원 제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여러 혜택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제도와 연계를 활성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기업규모별로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조기단축시 최대 3년) 월 40~80만원(조기단축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조기단축시 최대 3년) 월 10~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가. 현황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sup>1)</sup>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1억원이 감액편성된 3,155억원이다. 이는 일학습병행훈련비(2020년도 예산안 1,794억원)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sup>2)</sup>은 사업주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 시설, 장비비,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0억원이 감액편성된 1,291억원이다. 이는 일학습공동훈련센터 지원비(2020년도 예산안 1,000억원)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들에서는 2020년도 신규 내역 사업으로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산업계수도 청년맞춤형 훈련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에는 훈련지원비 139억원, 8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에는 훈련센터 지원비용이 각각 300억원, 4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직업훈련 신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590,388	414,661	414,661	315,544	△99,117	△23.9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0	0	0	13,866	13,866	순증
산업계수도청년맞춤형훈련	0	0	0	8,550	8,550	순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36,402	192,094	192,094	129,114	△62,980	△32.8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0	0	0	30,000	30,000	순증
산업계수도청년맞춤형훈련	0	0	0	4,320	4,32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2-350

2)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4-350

## 나. 분석의견

신규 개설되는 ‘수요’ 맞춤형 훈련의 경우, 훈련 설계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과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을 신규 훈련과정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동 사업들은 각각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은 ‘협약기업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와 채용예정자의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동 훈련은 총 90개 과정의 과정별 20명의 훈련을 목표로 총 1,800명에 대한 훈련비(139억원) 및 30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운영비(300억원)를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동 훈련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을 선발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으로, NCS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산업별 협의체에서 훈련과정을 제출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재직자와 채용예정자에 대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훈련은 채용예정자 1,500명, 재직자 1,500명 등 총 3,000명에 대한 훈련비(85.5억원)와 8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운영비(43억원)를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동 훈련 과정을 통해 전기차·자율주행차, 로봇, AR·VR 등 해당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도 직업훈련 신규 사업 계획안 현황]

구 분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지원대상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청년 중심)
훈련방법	공동훈련센터 방식	공동훈련센터
훈련분야	협약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직종 * 협약기업의 직무에 맞는 훈련 직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우대하여 선정 예정	전자, 전기, 기계, 정보 등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가 있는 분야 * 4차산업혁명, 신기술·고숙련 분야 등에 한정 하지 않음
특징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계 수요’ 맞춤형
’20 예산안	43,866백만원(1,800명)	12,870백만원(3,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들은 ‘기업’의 참여 수요가 중요하므로, 훈련 과정 설계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은 1,800명 이상의 협약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600개 이상의 협약기업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만큼 적정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업종별 8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8개 산업·업종 협의체와의 협의를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두 사업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sup>3)</sup>이나 구체적인 수요조사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의 경우, 최근 우선지원 대상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훈련인원이 확대되고 있다.<sup>4)</sup> 하지만 기존 재직자 일반훈련에서도 2018년 신규로 시작한 고숙련·신기술 훈련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sup>5)</sup> 등을 고려할 때, 훈련 과정 설계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은 업계와의 협의를 위해 공동훈련센터 대상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 설명회(19.9.6.), 기업수요 맞춤형 추진방향 의견수렴(19.9.6.~9.17.), 공동훈련센터 대상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활성화 간담회(19.9.27.)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4) 대중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참여 인원은 '15년 2,691명, '16년 3,672명, '17년 5,034명, '18년 11,989명이다.
- 5)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신기술·고숙련 훈련을 신규 편성하여, 26,860명의 훈련지원을 목표로 4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 사업들은 기존 훈련 과정에는 없는 기업 또는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훈련 사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구직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사 훈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차별화를 통해 기업 또는 재직자·구직자의 입장에서 참여할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분석, 과정설계 등 훈련과정 설계 컨설팅 및 훈련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직자 및 구직자의 경우 재직자 일반훈련 내의 고속련·신기술 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유사한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 및 재직자·구직자 직업훈련 과정]

구분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일반훈련(고속련·신기술)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자	구직자
훈련 방법	현장훈련	훈련기관 또는 기업 자체	훈련기관
훈련 분야	제품의 제조·생산 프로세스 관련 직무 훈련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속련과정: NCS 5수준 이상 신기술과정: 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8개 분야 등	NCS 5수준 이상,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8개 분야 (훈련기관은 협약기업과 협약 체결, NCS 단가 400% 이내 훈련비 지원)
특징	중소기업에 맞춤형 훈련 과정 지원	민간훈련기관 과정을 기업이 활용	민간훈련기관 과정을 구직자가 활용
'20 예산안	9,300백만원(9,150개소)	3,146백만원(20,973명)	26,470백만원(2,100명)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개설되는 ‘수요’ 맞춤형 훈련 설계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훈련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 및 구직자·재직자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기금을 통해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 조력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지출계획안은 총지출 기준 2019년 대비 359억 4,300만원(7.7%)이 증액된 5,00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체당금 지급 사업<sup>1)</sup>(전년 대비 329억 2,100만원 증액)과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sup>2)</sup>(전년 대비 39억 9,900만원 증액)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계획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 계	813,742	876,900	876,900	885,292	8,392	1.0
총지출	426,779	458,519	464,642	500,585	35,943	7.7
<b>체당금 지급</b>	<b>373,998</b>	<b>411,423</b>	<b>411,423</b>	<b>444,344</b>	<b>32,921</b>	<b>8.0</b>
무료법률구조지원	25,384	25,384	25,384	24,114	△1,270	△5.0
체당금조력지원	150	188	188	150	△38	△20.2
<b>체불청산지원 용자</b>	<b>12,777</b>	<b>8,392</b>	<b>14,515</b>	<b>18,514</b>	<b>3,999</b>	<b>27.6</b>
임채기금 운영비	14,470	13,132	13,132	13,463	331	2.5
여유자금 운용	386,963	418,381	412,258	384,707	△27,551	△6.7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 나. 분석의견

첫째, 체당금 지급 사업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지출규모 및 대상이 결정되는 의무지출 사업이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 지급 사업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하여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등 두 가지 유형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sup>3)</sup>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9억 2,100만원 증액된 4,44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sup>4)</sup>

### [체당금 지급 사업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체당금 지급	444,344백만원
- 기존 체당금	(371,021백만원)
• 일반체당금	: 177,114백만원(26,008명 × 6,810천원)
• 소액체당금	: 193,907백만원(64,852명 × 2,990천원)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73,323백만원)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 3,711백만원(26,008명 × 143천원)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47,843백만원(64,852명 × 738천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13,838백만원(3,712명 × 3,728천원)
• 재직자 체당금 신규 도입	: 7,931백만원(7,000명 × 1,133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3) 일반체당금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인정 등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연령별 상한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 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최대 1000만원(2019년 7월 1일 기준)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일반체당금 지급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12,161명 감소한 26,008명으로 편성됨에 따라 제도 개편을 위해 증액된 기금 규모에 비해 체당금 지급 사업의 전체 증액 규모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당금 지급 사업의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 등을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그 재정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① 체당금 지급상한액을 인상(+37억 1,100만원)하고, ②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138억 3,800만원)하며, ③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당금 제도(+79억 3,100만원)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하고<sup>5)</sup>, 현재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민사 확정판결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단축하여,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에 체불확인서가 지방관서에서 발급되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체당금 지급 사업은 지출대상과 지출금액이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사항들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전제로 지출계획안이 편성되었으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11일 발의된 이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체당금 지급 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사업명	의안번호	법률안	주요내용	비고
체당금 지급	201857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재직자 체당금 도입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용을 재정리

5)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등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차원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내 퇴직근로자 대상 생계비 용자 지급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함으로써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2019년까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39억 9,900만원 증액된 18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불청산지원 용자 18,5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용자: 12,777백만원= 3,038명 × 4.206백만원</li> <li>- 근로자 용자: 5,737백만원= 4,664명 × 1.2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근로자(4,664명) 산출근거: 93,285명(18년 체당금 신청자) × 10%(용자 신청율) × 50%(20.7월 시행)</li> <li>· 지원 단가(1.23백만원) 산출근거: 5.73백만원(18년 체당금 신청자 평균 체불액) - 4.5백만원(18년 체당금 신청자 평균 체당금 지급액)</li> </ul> </li> </ul> </li> </ul>
--

자료: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sup>6)</sup>에 따라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하여 주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 비용을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신청이 없을 경우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체불임금액을 용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57억 3,700만원)하였다. 하지만 이는 체불청산지원 용자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의 개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9월 23일 발의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사업명	의안번호	법률안	주요내용	비고
체불청산지원 용자	20226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생계비 용자 신청 -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환경노동 위원회 계류 중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용을 재정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퇴직근로자의 생계비 용자 지원 규정에 관한 개정안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추후 동 법률안 개정 심사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sup>1)</sup>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규모를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25억 8,200만원 증액된 14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근로복지기금지원	3,642	4,223	4,223	17,180	12,957	306.8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244	1,631	1,631	14,213	12,582	771.4

자료: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2019년 대비 771.4% 증액된 14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기금당 지원규모 14억 6,800만원에 제도개선에 따른 127억 4,500만원이 추가됨에 기인한다.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중소기업장의 평균 출연금과 출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정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22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2015년 7월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2016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이 신설된 2016년도의 기금은 8개였으며, 2019년에는 총 17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기존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던 기금이 8개로 전체 17개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기금 수	지원액	기금 수	지원액	기금 수	지원액	기금 수	지원액
기존	-	-	1	145	9	424	8	471
신규	8	870	10	780	10	819	9	312
합계	8	870	11	925	19	1,243	17	78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적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출연금의 100%까지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누적적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제도개선 강화방안 중 ]

현행	제도개선
출연금의 50% 범위	출연금의 100%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적으로 2억원 지원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누적적으로 최대 20억원 지원 * 참여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업·지역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50개 이상 사업장, 수혜 중소기업근로자 1,500명 이상) 지원액 및 지원기간을 추가 확대(5년간 20억원→7년간 30억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연간 2억원 → 최대 10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에 따른 증액분은 총 127억 4,500만원이며, ① 제도개선(기간, 출연한도, 금액)에 따른 기존사업장에 대한 지원액 35억 2,000만원, ② 신규로 설립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금 20개에 대한 지원액 36억 8,000만원, ③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출연지원 25억 4,500만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분에 대한 지원금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2020년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기금당 지원규모	73.4백만원(전년도 지원 평균액 기준) × 20개소		1,468
제도개선에 따른 증액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1개소×320백만원	3,520
	신규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20개소×184백만원	3,680
	대기업의 중소기업 출연지원	5개소×509백만원	2,545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지원	5개소×600백만원	3,000
	소 계		12,745
합 계			14,213

자료: 고용노동부

제도개선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①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한도액을 88억원으로 집계하고, 이 중 40%를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설립일로부터의 경과기간, 기지원액,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3억원, 8억원, 18억원의 추가출연을 가정한 결과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 계획액]

(단위: 개소, 백만원)

추가 지원	개소	금액	5개소 미만 또는 100인미만	5~9개소 또는 100인~499인	10~29개소 또는 500인~999인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3억원	6	1,800	-	6	-	-
8억원	2	1,600	-	-	2	-
18억원	3	5,400	-	-	-	3
합계	11	8,800	-	6	2	3

자료: 고용노동부

본 분석에서는 기존의 기금법인에 대한 지원액 평균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구간별로 분석하였다.

최대 3억원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는 6개소의 최근 4년 동안 평균 지원액은 8,300만원임에 비해, 2020년 계획안에서는 평균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8억원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는 2개소가 2016~2019년 동안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8백만원에 불과하지만, 2020년 계획안에서는 3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개선으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간인 30개소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기금법인 3개소가 2016~2019년 동안 지원받은 출연금은 평균적으로 1억 7,4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계획안에 평균적으로 7억 2,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출연금 지원 여부, 규모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개선으로 출연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여도 사업주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중소기업장의 평균 출연금과 출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정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연도별 지원액]

(단위: 개소, 백만원)

추가 지원	개소	2016	2017	2018	2019	평균	2020년 계획안		
							지원액	40% 가정	개소당 평균
3억원	6	-	96	83	69	83	1,800	720	120
8억원	2	5	6	9	13	8	1,600	640	320
18억원	3	200	0	148	0	174	5,400	2,160	720
합계	11	250	102	240	82	-	8,800	3,520	-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② 신규로 설립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금 20개소에 평균적으로 1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총액은 36억 8,000만원이다. 신규 설립될 기금 20개소는 중소형 15개소, 대형 5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신규설립 추정 기금 수 및 계획안]

(단위: 개소, 백만원)

산출내역		
중소형	15개소 × 194백만원	2,910
대형	5개소 × 154백만원	770
합	계	3,680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중소형 신규지원 기금 수는 2016년 6개소, 2017년 9개소, 2018년 10개소이며, 2019년 8월 말까지의 신규지원 수도 9개로 이들 과거 추세를 반영할 경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0개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인 기금법인이 2020년에 5개 설립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2016~2019년 동안 설립된 개소수가 총 3개에 그쳤음을 감안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의욕적 목표설정이라고 하기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 개소 수]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안
중소형	6	9	10	9	15
대 형	2	1	0	0	5
합 계	8	10	10	9	20

주: 2019년 8월 말까지 누계임  
자료: 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④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 지원 30억원이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립될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평균적으로 6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2019년까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민간사업장(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였지만, 2020년 계획안에 신규로 반영된 부분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6억원을 출연할 경우, 고용노동부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동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가능한 예산이므로, 사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 반영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안의 지원단가, 설립 예정 기금 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5개소×600백만원 = 3,000

자료: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63



기상청



## 1 현황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7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2억원이 감소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107	22,036	22,036	7,805	△14,231	△64.6

자료: 기상청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95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6억원(1.2%)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4,728	388,191	390,531	395,174	4,643	1.2

자료: 기상청

한편,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기상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다목적항공기 도입 사업 미수납 지체상금이 2019년 수납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약금 수입이 감소하였고(2019년 147억원 → 2020년 4억원), 국민안전을 위한 관측망 확충 및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등 핵심사업 투자를 확대를 위해 ②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이 증액(2019년 127억 → 2020년 163억), ③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 개발(R&D) 등 신규사업 5과제에 196억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상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현장의 기상관측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장비는 특성상 상시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시·비상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입된 기상관측차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R&D) 사업의 후속사업인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특성상 참여인력의 채용·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단 구성 및 인력채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단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기상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96억원 규모이다.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1억원,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에 95억원,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 개발(R&D)에 43억원 등이다.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기상·지진장비 인증 센터 구축 및 운영	1,093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R&D)	2,221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R&D)	9,525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R&D)	4,254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 개발 (R&D)	2,480
합 계		19,573

자료: 기상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R&D),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①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은 고층비양장비 자동화 전환, 모바일 관측차량 신규 도입 등으로 증액되었고, ②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R&D)은 주요지진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지하단층 조사를 위해 증액되었으며, ③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은 서해 덕적도에 구축 추진중인 제2해양기지 구축을 위한 1차년도 공사비 반영, ④ 무선FAX시스템 운영(정보화)은 해양기상서비스 전달 체계 전환을 위한 ISP 반영으로 증액되었다.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4개)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209	12,749	16,396	3,647	28.6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882	882	2,043	1,161	131.6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R&D)	4,405	4,405	6,500	2,095	47.6
	무선FAX시스템 운영 (정보화)	310	310	410	100	32.3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기상청

## II

## 개별 사업 분석

1

###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 가. 현황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sup>1)</sup>은 지상·고층기상관측장비의 첨단화와 장비교체 및 확충으로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고, 항사, 적설, 안개,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적설계와 모바일 관측차량 등 지상기상관측장비의 보강과 고층기상관측장비 중 자동비양장치 보강을 위하여 2019년 추경예산 127억 4,900만원 대비 36억 4,700만원(28.6%)이 증액된 16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 [2020년도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1,212	12,209	12,749	16,396	3,647	28.6

자료: 기상청

동 사업은 ASOS(종관기상관측장비), AWS(방재기상관측장비), AAOS(농업기상관측장비), PM10(부유분진측정기) 등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교체 및 보강, 지상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레윈존데·오토존데·연직바람관측장비·라디오미터 등 고층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2) 현재 지진·고층·레이더·항공 등 첨단화 기상관측장비의 구매 및 교체 사업은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상·해양 등 일반 범용장비의 구매 및 교체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법정

기상청은 2020년도 예산안에서 지상·고층기상관측장비의 교체,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① 지상기상관측장비 중 적설관측망 62대 및 모바일기상관측차량 2대를 신규 도입하고, ② 자동비양장치 5기를 도입함으로써 고층기상관측장비 중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윈존데를 자동관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다.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2020년도 예산안 증액 세부내역]

○ 지상기상 관측장비 보강 1,332백만원
- 적설계 62대 × 16백만원 = 992백만원
- 모바일 관측차량 2대 × 170백만원 = 340백만원
○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7,835백만원
- 자동비양장치 보강 5개소 × 800백만원 = 4,000백만원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상청은 지역별 적설 현황 및 적설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설계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눈은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도로제설,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역별로 상세한 관측자료가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적설관측장비는 강수량 관측망 대비 38.8% 수준<sup>3)</sup>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적설은 해발고도, 지면상태 등 관측환경을 비롯하여 강수 형태(눈·진눈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3) 강수량 관측망은 전국에 5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적설관측장비는 23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깨비·비 등),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관측값이 크게 달라져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큰 기상요소로서 강수량계보다 조밀한 관측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겨울철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눈(雪)에 대한 정확한 관측과 예·특보 운영을 위해 2029년까지 총 596대의 적설관측장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설치되는 62대를 포함한 총 365대의 신규 지점은 다설지역 및 대설피해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sup>4)</sup>

[적설관측장비 확충·운영 계획]

(단위: 대)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목표
신규		62	63	63	57	12	51	2	27	10	18	596
교체	231				5	50	11	60	35	70	62	
합계		62	63	63	62	62	62	62	62	80	80	

자료: 기상청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2020년 예산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12개소, 부산·경남 10개소, 광주·전라 14개소, 강원 6개소, 대구·경북 9개소, 대전·충청 9개소 및 제주 2개소 등 총 6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설로 인한 피해액 규모와 설치 예정지역의 적설 현황 및 기존에 설치된 적설관측장비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다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최근 10년간(2009~2018년) 시도별 대설피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피해액 기준으로 강원도가 562억 5,7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크며, 경상북도 383억 4,400만원, 충청북도 312억 7,900만원, 충청남도 254억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합계 대설피해액이 115억 2,500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대설피해 규모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상청은 ASOS(중관기상관측장비) 및 AWS(방재기상관측장비) 설치지점(596개소)에 적설관측장비를 통합 설치함으로써 적설관측 조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2018년 시도별 대설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명	총 피해액 <sup>1)</sup>	대설피해액
강원도	255,739	56,257
경상북도	363,554	38,344
충청북도	148,717	31,279
충청남도	306,707	25,420
전라남도	657,776	24,809
전라북도	327,612	23,183
경기도	570,941	17,487
제주특별자치도	104,775	10,611
부산광역시	200,339	5,860
경상남도	491,344	4,242
울산광역시	80,676	1,423
세종특별자치시	1,834	777
인천광역시	28,217	595
광주광역시	21,617	346
대전광역시	8,440	103
대구광역시	837	88
서울특별시	63,668	-
합계	3,628,063	240,823

주: 1) 총 피해액은 태풍, 호우, 대설, 강풍, 지진,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 총 피해액 규모로, 2018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설치 예정지역의 적설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의 누적 신적설이 평균 37.6cm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경남 지역은 평균 0.34cm에 그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울릉도를 제외할 경우 누적 신적설은 평균 6.3cm로 낮은 실정이다.

[2020년 적설관측장비 설치예정지역 및 지역별 적설 현황]

(단위: 개소, cm)

구분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	제주
누적 설치대수 <sup>1)</sup>	43	25	45	41	29	35	13
2020년 설치예정	12	10	14	6	9	9	2
누적 신적설 <sup>2)</sup>	19.8	0.34	27.9	37.6	34.1 (6.3) <sup>3)</sup>	20.6	13.9

주: 1) 2018년까지 설치된 적설관측장비 및 2019년 설치예정인 적설관측장비의 합계임

2) 누적 신적설은 레이저식 적설계 설치지점 인근 지점 관측자료(16.10.1.~19.4.30.)의 지역별 평균치임

3) 괄호는 울릉도를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 누적 신적설 평균치임

자료: 기상청

그러나 기상청은 누적 적설량과 대설피해액 규모는 적으나, 적은 눈에도 교통·물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산·경남 지역에 적설관측장비 10개소를 설치하고, 적설 및 대설피해액 규모가 매우 높은 강원 지역에는 기존 설치 대수를 고려하여 6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sup>5)</sup> 또한, 부산·경남 지역과 제주 지역의 피해액 규모는 유사하나 적설이 많은 제주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2개소의 적설관측장비를 설치하는 등 다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상청은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별 적설관측장비 수량과 지역별 적설 현황 및 적설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설계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과 함께 상시·비상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입된 기상관측차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재난 및 위험기상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기상관측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측공백지역을 최소화하고 위험기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관측을

5)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의 대설피해액(11,525백만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작으나 적은 눈에도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등 사회적 파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심지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강원 지역은 기존 설치대수와 설치지점 간 공간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0년 예산에서는 인구밀집지역과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청과 대전청에 총 2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장까지 2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향후 광역별로 총 9대의 관측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기상관측차량에는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의 측정이 가능한 AWS(방재기상관측장비)와 레윈존데, 드론 등 고층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며, 차량 도입과 개조에 1억 2,000만원, 관측장비 설치에 5,000만원 등 차량 1대당 1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sup>6)</sup>

####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운영 계획]

##### ○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운영

- 차량배치: 광역별 차량 배치(9대)로 현장까지 2시간 내 출동
- 관측장비: 지상(AWS: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고층(레윈존데, 드론(대기경계층)) 관측
- 현장 의사결정 지원: 기상실황, 분석, 예측 시스템 운영, 현장 브리핑 실시 등
- 차량운영: 기본 2인(운영, 관측), 대형 재난 2인 추가(브리핑, 분석 등)
- 소요 예산: 170백만원
  - 차량도입: 70백만원, 차량개조 50백만원, 관측장비 50백만원

자료: 기상청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장 기상브리핑을 통해 산불 등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태풍 등 위험기상 예측 강화를 위한 관측정보를 수집하며, 장비 성능분석을 위한 비교 관측, 올림픽 등 국가의 주요행사 지원에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행 중인 관측차량 5대<sup>7)</sup>의 운영실적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총 136일, 2018년에는 총 186일이 운영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9개월간 관측차량의 운행일수는 총 98일에 그쳐 관측차량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평상시에는 차량 운행과 관측을 위한 인력 2인이 투입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브리핑 및 분석 지원을 위해 2인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7)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은 2012년부터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을 5대 도입·운영 중이며, 그중 2대는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2019년 3월부터 부산지방기상청과 광주지방기상청에 각각 1대씩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 모바일기상관측차량 운영 현황]

구분	운영지역	운영일	내 용	조사기간	
재난대응 및 위험기상 특별관측	강원, 부산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 현장지휘본부에 관한 기상 지원</li> <li>재난대응 활동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 실황·예측에 관한 브리핑</li> <li>산불발생 인근 지역 특별 관측 실시</li> </ul>	'19.1.1. ~9.30.	
	부산, 울산, 밀양, 여수, 보령, 영광, 무안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 영향 시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특별 관측</li> <li>제5호, 제8호, 제13호, 제17호 태풍 관측</li> <li>태풍 통과 지역에서의 특별 관측</li> </ul>		
지역 특이 기상 분석 지원	부산, 천안, 아산, 통영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이 기상 분석을 위한 관측 실시</li> <li>도시기상 연구 등에 관한 지원 관측</li> <li>충청지역 차령산맥 지형효과 연구에 관한 지원 관측</li> <li>폭염 특성 분석을 위한 관측</li> </ul>		
	강원 영동영서	3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지역 적설 예측 향상을 위한 대설 분석 지원</li> <li>강원 산지·영서 등 강수·적설 메커니즘 이해</li> <li>강원영동 입체적 공동 관측 실시</li> <li>강원영동 지형과 동풍 상호 메커니즘 분석</li> </ul>		
	광주, 울산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기상관측장비 비교 관측</li> <li>국지적 특성에 따라 기온 등 관측자료 검증</li> </ul>		
유관기관 협력 등	밀양, 김해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소통 강화</li> <li>기상관측장비 운영기관 기술지도와 대표성 검증</li> </ul>		
	여수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상지원</li> <li>경기장 주변 기상관측 및 기상정보 제공</li> </ul>		
합 계		98일	-		

자료: 기상청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은 “과학원 기상관측차량 현장 운영 가이드”<sup>8)</sup> 및 “국립기상과학원 기상관측차량 관측 및 운영·관리 지침”<sup>9)</sup>을 마련하여 관측차량의 효

8) “과학원 기상관측차량 현장 운영 가이드”

제4조(역할) “기상관측차량”에 대한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차량 운영기관은 안전 운행 및 관측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최상의 관측 장비 및 차량 상태를 유지하며, 주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차량 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최초 배치 시에는 배치 후 1개월 이내)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측정책과와 과학원에 제출한다.

제5조(관측 운영) 차량 운영기관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을 실시한다.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관측차량 관측 및 운영·관리 지침」의 제15조(관측 운영)제1~4항에 따른다.
- 장비 비교 관측(이전, 검·교정 시), 지역 중요행사 등 차량 운영기관의 부서장 판단 하에 관측을 할 수 있다.

9) “국립기상과학원 기상관측차량 관측 및 운영·관리 지침”

제5조(임무) “기상관측차량”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해기상에 대한 감시, 예측 기술 개발(재난현장 및 예·특보 발표지역 기상관측)에 필요한 관측 수행
- 재해현장 중심의 맞춤형 방재업무(재난발생 현장 지원) 지원
- 기상관측장비 시험운영 및 활용 연구(기상관측차량 개발 및 연구 활동) 수행(지원)

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운영기관별로 수립된 세부운영계획의 경우, 상시와 비상시의 관측차량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단기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등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또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의 도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은 모바일기상관측차량 도입과 함께 상시·비상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도입된 기상관측차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4. 국내외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참여
  5. 국가적인 행사 지원
  6. 기타 기상청장,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가. 현 황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sup>1)</sup>은 서해상에서 내륙 지역에 접근해오면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와 폭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선행관측 및 사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기상기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제1해양기상기지) 운영비에 더해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공사를 위하여 2019년 예산 대비 11억 6,100만원(131.6%) 증액된 2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740	882	882	2,043	1,161	131.6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740	741	741	742	1	0.1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0	141	141	1,301	1,160	822.7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제2해양기상기지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법」 제7조의2 제1항 및 2002년 10월 수립된 「해양기상관측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서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위험기상의 조기 감시를 목적으로 2005년 3월부터 충남 태안군 북격렬비도에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제1해양기상기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335-303

하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집중호우, 폭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공백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해양기상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측·감시할 필요가 있는바, 기상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기지 구축 공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1억 6,000만원 증액한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1,301백만원
- 예정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 공사비 : 2,988백만원(공사비)×40%(공사공정률)= 1,195백만원
- 감리비 : 2,988백만원(공사비)×8.52%(감리비요율)×40%= 102백만원
- 시설부대비 : 2,988백만원(공사비)×0.36%(시설부대비요율)×40%= 4백만원

자료: 기상청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연차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기본조사설계비(420-01)	47	-	-	47
실시설계비(420-02)	94	-	-	94
공사비(420-03)	-	1,195	1,793	2,988
감리비(420-04)	-	102	153	255
시설부대비(420-05)	-	4	6	10
소계	141	1,301	1,952	3,394

자료: 기상청

그러나 제2해양기상기지 신축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는 8월 21일에 이루어져 9월 20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또한, 설계 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2해양기상기지의 공사 착수는 2020년 5~6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해양기상기지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기간은 2019년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이며, 기상청은 연내에 설계가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사업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 자체가 지연되거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한 기간 내에 제2해양기상기지가 구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가 원활히 집행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완료 및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sup>1)</sup>은 기상청 및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R&D)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위험기상으로부터 전 지구적 이상기상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수치예측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R&D) 사업이 2019년 종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95억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	-	-	9,525	9,525	순증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2011~2019년)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10km 해상도의 중기(3~10일) 전지구예보모델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 위험기상 및 전지구적 이상기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상청은 예보 기간이나 지역, 기상현상에 관계없이 30일까지 수치예측정보를 하나의 통합모델로 예측하는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3133-312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통한 기상재해 사전대비 역량 강화
- (사업목표) 시간별·지역별 관심현상에 따라 12km~수백m 간격으로 예측하여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지원하는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2020~2026년(총 7년, 1단계 3년 + 2단계 4년)
- (총사업비 및 인력) 1,023억원(내부 842억원, 공모과제 181억원) / 연평균 98명
- (사업 추진방식) 연구전담 사업단 + 외부 공모형과제(총사업비의 17.7%)
- (사업조건·시행주체) 연구전담 사업단 출연(가칭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사업단)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특성상 사업단 참여인력의 채용·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상청은 사업단 구성 및 인력채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단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1단계 3년, 2단계 4년) 총 1,023억원이 투입될 예정<sup>2)</sup>이며, 연구전담 사업단(가칭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사업단)을 통해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등 3개 내역사업별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총 사업비의 17.7%(181억원)에 해당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공모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상청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의 후속사업 추진과정에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2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 0.99, ΔHP 0.749)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 내역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내역사업	1단계			2단계			
	'20	'21	'22	'23	'24	'25	'26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29	41	41	40	40	28	28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42	57	73	73	74	73	59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25	43	46	48	49	49	34
합 계	95	140	161	161	163	149	122

주: 합계는 소수점 차이로 불일치 발생가능함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연구개발을 담당할 사업단 설립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확정 전부터 상세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하고, '19년 10월 중으로 사업준비단을 출범한 후 사업단 설립계획(안)과 사업추진계획(안) 및 사업단 규정·정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9년 11월 말까지 법인 설립, '20년 1월 말까지 사무국 구성과 사업단장 초빙 및 승인, 행정인력 채용 완료, '20년 2월까지 기상청과 사업단 간 연구개발출연사업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인력 채용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2020년 신규 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 90명에 대한 9개월분의 인건비 5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정원(총 58명)에 비해 신규 사업단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0년도 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R&D) 사업 인건비 편성내역]

내역사업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인건비 등 합계 <sup>1)</sup>
4차원 고품질 기상분석을 위한 최신 자료동화기술 개발	5	12	10	1,766
가변격자체계 기반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7	23	15	2,932
거대 수치예측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수요맞춤 활용기술 개발	4	8	6	1,161
합 계	16	43	31	5,859

주: 1) 인건비 등 합계는 인건비, 성과급,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를 합한 금액임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선행사업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 인력양성 효과를 거두었고, 관련 기술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인지도 상승 등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단 인력 및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거쳐 후속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5~2019년) 기존 사업단의 연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활동비, 연구지원비 등에서 출연금의 이월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인력 현황 및 이월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원(A)	58	58	58	58	58
현원(B)	56	54	58	57	56
결원(A-B)	2	4	0	1	2
결원발생 사유	이직 및 퇴사	이직 및 퇴사	-	이직 및 퇴사	이직 및 퇴사
출연금 이월액	371	661	151	636	미정

자료: 기상청

특히,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이월액의 발생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단의 조직특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신규 사업단 또한 2026년까지 7년간 유지·운영되는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업단 참여인력의 채용·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단 구성 및 인력채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단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후속사업인 통합형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 및 신규 사업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단과 후속 사업단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계획 및 인력 확보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sup>1)</sup>은 2018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A호의 정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19.7)됨에 따라 위성으로부터 산출되는 고속기상관측자료를 통한 위험기상 감시, 수치예보모델 활용도 향상, 기후환경 감시 및 위성자료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42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	-	-	4,254	4,254	순증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신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 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천리안위성 2A호의 본격적인 관측 서비스 개시에 대응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다양한 산출물을 수치예보모델, 태풍, 해양, 기후, 환경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1차년도 신규 예산은 42억 5,400만원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한 위험기상 탐지·예측 및 위성자료의 수치예보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위험기상 예보지원 기술개발 내역사업에 16억 1,500만원, 기상위성자료에 기반한 기후환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3137-307

경 감시 및 재난 대응, 우주 위험기상 조기탐지, 위성정보 서비스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등 기상위성 활용서비스 기술개발 내역사업에 26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안	연구개발단계	주관기관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R&D)	합계	4,254	응용, 개발	직접 수행 (국가기상 위성센터)
- 위험기상 예보지원 기술개발	소계	1,615		
	위성자료 활용 위험기상탐지 및 예측기술개발	1,080		
	위성자료의 수치예보 활용기술개발	535		
- 기상위성 활용서비스 기술개발	소계	2,639		
	위성자료의 기후환경 활용기술개발	640		
	위성정보 스마트서비스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1,542		
	우주기상 관측 활용기술개발	457		

자료: 기상청

동 사업은 2018년 12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의 설계수명 및 활동 기간(약 10년)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018년 수행한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기획연구” 결과를 통해 예상한 560억원 규모에 비해 축소된 43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위성과 관련한 기술 수준 및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구체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획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2020~2024년)와 2단계(2025~2029년)에 각각 28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2) 기상청은 당초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을 70억원, 2029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를 560억원 규모로 예상하였으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2020년 예산안 규모가 축소되었다.

3) 기상청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내외의 기술개발 환경 변화와 대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1단계 사업 종료 이전에 동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 신규 편성된 예산안 규모를 고려할 때, 기상청이 예상한 총사업비(560억원) 및 1단계 사업비(280억원)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동 사업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외부 용역사업의 투자 비율을 축소하고, 자체연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조정하는 등 동 사업의 1단계 사업 추진 시 편성된 예산안 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단계 사업 종료 이전에 위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중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 성 영 예산분석관  
어 예 원 예산분석관

**지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승 미 자료분석지원요원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223-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